



시 보



제1418호 2019. 12. 23.(월)

조 례

○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2
○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8
○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12
○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16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1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9
○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49
○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9
○ 목포시 내 집가게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62
○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64
○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74
○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6
○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78
○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86

규 칙

○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91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3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5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1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47

공 고

○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54
-----------------------------	-----

회람							
----	--	--	--	--	--	--	--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12호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포시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목포시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4. 바둑 꿈나무 발굴 · 육성
5.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6.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체육진흥조례」 및 「목포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13호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 ④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목포시 체육회에 소속 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있는 자로 체육회에서 추천 받은 자
- ⑤ 위촉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외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강의가 어려운 경우

4. 본인의 의사 또는 수강인원의 감소 등으로 계속해서 강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당강사에 대한 불평민원이 연2회 이상 발생하여 프로그램 폐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강좌를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4년 이상 계속하여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강사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강사) ① ~ ② (생략) <u>③ ~ ⑦ (신설)</u>	제9조(강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④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목포시 체육회에 소속 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있는 자로 체육회에서 추천 받은 자 ⑤ 위촉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국외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강의가 어려운 경우4. 본인의 의사 또는 수강인원의 감소 등으로 계속해서 강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해당강사에 대한 불평민원이 연 2회 이상 발생하여 프로그램 폐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6. 기타 사유로 강좌를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
|--|---|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14호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목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자원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소관 부서 과장
-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 할 수 있다.

제16조(이수현황의 파악 등)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반장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의 민주시민교육 이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17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15호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대 아동과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예방·지원정책의 진정한 예방을 위해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아동 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학대 상황 등을 인지·판단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 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아동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및 예방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아동의 보호자, 이해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등의 사전 동의서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추인이나 관계인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실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16호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목포시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3. “대상주택”이란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청 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또는 해당 동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제5조(방문방역 기동반 등) 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

용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 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 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제7조(방역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등) 시장은 기동반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3>

방 문 방 역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 청 자	세대주 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택형태	☐ 아파트 및 공동주택 (m ²) ☐ 단독주택		
방역 희망 일시	20 . . . (:)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호 서식] <개정 2019. 12. 23>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

○ ○ 동 행정복지센터

번호	신청 일자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 기재)	처 리		방문 방역자
					예정일	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3호 서식] <개정 2019. 12. 23>

방역약품 관리대장

품명 : , 단위 :

[illegible]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17호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주관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

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관광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4급 공무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부, 사회복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2. 인·허가 관련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구성된 목포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본다.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9.12.23>

심 의 요 구 서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신 청 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탁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목포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9.12.23>

의 건 서

안 건 번 호			목 적	
신청인	주 소		기탁금품액	
	성 명		기탁 관서	
	생년월일		기탁 방법	

1. 신청개요

- 가. 기탁예정일
- 나. 기탁금품의 종류, 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라. 기탁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 마. 방문모집허가 신청의 경우 그 취지
- 바.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 성명
- 사.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 가. 관련부서
- 나. 세정과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19.12.23>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 그 결과를 「목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 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목포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목포시장 귀하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제정 2019.12.23>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번호 :

2. 심의안건

가.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 탁 일 :

마. 기탁관서 :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 · 수정의결 · 부결 · 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 · 보류)이유 :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18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문화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안전도시건설국”을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감사실, 기업유치실”을 “감사실”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감사실장은 시정감사전반, 공직자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기업유치실장은 산단조성, 대양·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를 “감사실장은 시정감사전반, 공직자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획문화국에 두는 과)”를 “(기획관리국에 두는 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문화국에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지방보조금 관리, 미디어마케팅,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규제개혁추

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지방보조금 관리,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정책개발,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을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를 “(관광문화체육국에 두는 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관광경제국에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를”을 “관광문화체육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기획 총괄, 관광 진흥·홍보, 미디어마케팅, 관광 사업 및 시설관리, 축제, 음악분수 업무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체육진흥, 국제축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공연·홍보, 문학관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운영·관리(부주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포함),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 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전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소상공인, 지식·문화산업,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미래성장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국제교류 및 협력, 에너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산단조성, 대양·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고용 업무, 청년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도서종합개발, 해양레저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산산업, 해양자원 조성·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원산지표시, 수산 식품 업무에 관한 사항
6.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종전의 제16조) 제1호 각 목 외 부분 중 “**환경관리사업단**”을 “**환경수도사업단**”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상수도설치, 상수도시설 관리, 수질검사, 몽탄정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하수도설치, 하수도시설 관리, 하천,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종전의 제16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해수질관리사무소

- 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하수처리,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종전의 제16조)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5호로 하

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북항수질관리사무소

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하수·분뇨처리,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감사실, 기획문화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소관에 관한사항”을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에 관한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기업유치실, 관광경제국, 환경관리사업단,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발전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도시발전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목포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 ⑤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⑥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 ⑦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 ⑧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 ⑨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 ⑩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⑪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 ⑫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⑬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⑭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 ⑮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관광경제국장**” 을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기업유치실장**” 을 “**기업유치과장**” 으로 한다.

- ①⑥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관광경제국장**” 을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 ①⑦ 목포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관광경제국장**” 을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자치행정복지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①⑧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관광경제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①⑨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관광경제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②⑩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관광경제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②⑪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관광경제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②⑫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관광경제국장**” 을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 ②⑬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관광경제국장**” 을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 ②⑭ 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제26조제3항 “**관광경제국장**” 을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 ②⑮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관광경제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②⑯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환경관리사업단장**” 을 “**환경수도사업단장**” 으로 한다.

- ②⑰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②⑧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②⑨ 목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③⑩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상하수도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 자치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⑪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③⑫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자치행정복지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③⑬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③⑭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③⑮ 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③⑯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③⑰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③⑱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③⑲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관광경제국장,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 문예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④⑩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체육시설관리과”로 한다.

- ④⑪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상하수도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상하수도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 ④⑫ 목포시 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④⑬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제18조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④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 ④⑮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상하수도사업단”을 “환경수도사업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상하수도사업단”을 “환경수도사업단”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상하수도사업단”을 “환경수도사업단”으로 한다.

- ④⑯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5항제2호 “상하수도사업단”을 “환경수도사업단”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본문)

현행	개정안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문화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안전도시건설국</u> 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 <u>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u> -----.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직속에 <u>감사실, 기업유치실</u> 을 둔다. <u>감사실장은 시정감사전반, 공직자 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기업유치실장은 산단 조성, 대양·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u>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 <u>감사실</u> 을 둔다. ---- <u>감사실장은 시정감사전반, 공직자 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u>
제6조 (<u>기획문화국</u> 에 두는 과) ① <u>기획문화국</u> 에 <u>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u> 를 둔다.	제6조 (<u>기획관리국</u> 에 두는 과) ① <u>기획관리국</u> 에 <u>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u> 를 둔다.
② <u>기획문화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u>기획관리국장</u> -----.
1. <u>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 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지방보조금 관리, 미디어마케팅,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u>	1. <u>시정기획·종합조정, 지시사항, 시의회운영 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총괄, 지방보조금 관리, 자치법규관리, 소송, 지역발전, 정책개발, 규제개혁추진, 광역행정, 인구정책,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u>
2. <u>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예술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u>	<삭 제>
3. ~ 6. (생략)	2. ~ 5.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복지국에 <u>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u> 을 둔다.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 ----- <u>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u> -----.

② (생 략)

2. 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체육진흥, 국제축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제8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기획 총괄, 관광 진흥·홍보, 관광 사업 및 시설관리, 축제, 음악분수 업무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전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소상공인, 지식·문화산업,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운영, 미래 성장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국제교류 및 협력, 에너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고용 업무, 청년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도서종합개발, 해양레저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산산업, 해양자원 조성·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원산지표시, 수산식품 업무에 관한 사항
6. 유통, 농업·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2. ~ 5.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8조(관광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체육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을 둔다.

② 관광문화체육국장-----.

1. 관광기획 총괄, 관광 진흥홍보, 미디어마케팅, 관광 사업 및 시설관리, 축제, 음악분수 업무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 교육지원,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체육진흥, 국제축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공연·홍보, 문학관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운영·관리(부주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포함),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를

제10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 (생 략)

1. 환경관리사업단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2. 상하수도사업단

둔다.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전반,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 · 소상 공인, 지식 · 문화산업, 산업단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 · 운영, 미래성장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국제교류 및 협력, 에너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산단조성, 대양 ·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 고용 업무, 청년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 · 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도서종합개발, 해양테러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산산업, 해양자원 조성 · 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 · 원산지표시, 수산식품 업무에 관한 사항
6. 유통, 농업 · 친환경농업, 축산, 학교급식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 제16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1. 환경수도사업단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상수도설치, 상수도시설 관리, 수질검사, 몽탄정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하수도설치, 하수도시설 관리, 하천,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u><신설></u> 7. (생략) 제17조 ~ 제19조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u>남해수질관리사무소</u> 가. <u>남해환경수질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하수처리,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u> <u><삭제></u> 4. <u>북항수질관리사무소</u> 가. <u>북항수질관리사무소 시설운영, 하수·분뇨처리,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8조 ~ 제20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	---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소 명</th><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tr> </thead> <tbody> <tr> <td>환경관리사업단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자원화시설 - 재활용선별장</td><td>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td></tr> <tr> <td>상하수도사업단 · 수 도 과 몽탄정수장 · 하 수 과 · 남해수질관리과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 북항수질관리과</td><td>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td></tr> <tr> <td>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td><td>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td></tr> <tr> <td>문예시설관리사무소 · 시민문화체육센터 · 목포문학관</td><td>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목포시 남농로 95(용해동)</td></tr> <tr> <td>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목포체육관 · 실내수영장 · 유달경기장 · 시립정구장 · 시립테니스장 · 시민테니스장 · 목포파크골프장 · 부주산테니스장 · 목포시궁도장 · 부주산축구장 · 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 · 부주산족구장 · 영산호카누경기장</td><td>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양을로 397번길 90(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td></tr> <tr> <td>목포자연사박물관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td><td>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목포시 삼학로 92-98(산정동)</td></tr> <tr> <td>자동차등록사무소</td><td>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td></tr> </tbody> </table>	사 업 소 명	위 치	환경관리사업단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자원화시설 - 재활용선별장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상하수도사업단 · 수 도 과 몽탄정수장 · 하 수 과 · 남해수질관리과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 북항수질관리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시민문화체육센터 · 목포문학관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목포시 남농로 95(용해동)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목포체육관 · 실내수영장 · 유달경기장 · 시립정구장 · 시립테니스장 · 시민테니스장 · 목포파크골프장 · 부주산테니스장 · 목포시궁도장 · 부주산축구장 · 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 · 부주산족구장 · 영산호카누경기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양을로 397번길 90(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목포자연사박물관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목포시 삼학로 92-98(산정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4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소 명</th><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tr> </thead> <tbody> <tr> <td>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재활용선별장 ·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자원화시설 - 환경에너지센터 · 수 도 과 - 몽탄정수장 · 하 수 과</td><td>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고하대로 1140-73(대양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td></tr> <tr> <td>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td><td>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td></tr> <tr> <td>남해수질관리사무소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td><td>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td></tr> <tr> <td>북항수질관리사무소</td><td>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td></tr> <tr> <td>자동차등록사무소</td><td>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td></tr> </tbody> </table>	사 업 소 명	위 치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재활용선별장 ·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자원화시설 - 환경에너지센터 · 수 도 과 - 몽탄정수장 · 하 수 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고하대로 1140-73(대양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남해수질관리사무소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사 업 소 명	위 치																												
환경관리사업단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자원화시설 - 재활용선별장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상하수도사업단 · 수 도 과 몽탄정수장 · 하 수 과 · 남해수질관리과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 북항수질관리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시민문화체육센터 · 목포문학관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목포시 남농로 95(용해동)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목포체육관 · 실내수영장 · 유달경기장 · 시립정구장 · 시립테니스장 · 시민테니스장 · 목포파크골프장 · 부주산테니스장 · 목포시궁도장 · 부주산축구장 · 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 · 부주산족구장 · 영산호카누경기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양을로 397번길 90(상동)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목포자연사박물관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 남농로 135(용해동) 목포시 삼학로 92-98(산정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사 업 소 명	위 치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재활용선별장 ·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자원화시설 - 환경에너지센터 · 수 도 과 - 몽탄정수장 · 하 수 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고하대로 1140-73(대양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남해수질관리사무소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별표 2] <개정 2007.12.31, 2008.7.28, 2009.8.3, 2010.3.29, 2011.6.20, 2011.12.26, 2012.3.30, 2012.12.17, 2013.6.19, 2014.12.29, 2016. 6. 7, 2016. 12. 19, 2018. 12. 17, 2019.12.2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4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재활용선별장 •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자원화시설 - 환경에너지센터 • 수 도 과 - 몽탄정수장 • 하 수 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 대양로 241-55(대양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대양로 241-41(대양동) 목포시 고하대로 1140-73(대양동)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 도시문화재과 • 공원녹지과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남해수질관리사무소 -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목포시 삼학로 222-2(용해동) 목포시 옥암동 산 66-1번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33(연산동)
자동차등록사무소	목포시 연산로 197(연산동)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19호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10조의3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10조의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 4. (현행과 같음) <u>5.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20호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할인가매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제2호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②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③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관람료)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관람료)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관람료)에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관람료)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⑦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u> ①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u>제19조 (생 략)</u>	<u>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u>

[별표 3]<개정 2006.1.16, 2008.3.31, 2010.10.4, 2011.12.26, 2016.12.19., 2018.12.17. 2019.12.23>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비 고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유 달 경기장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목포살내 체육관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실 내 수영장	일권	2,500	2,000	1,500	2,000	1,500	1,000	2시간 기준	
	월회원	45,000	35,000	25,000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월강습	10,000원 적용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강습료 10퍼센트 감면	
다이빙장	2시간 기준	5,000	4,000	3,000	4,000	3,000	2,000		
부주산 국제파크 골프장	1인당	2,000	1,000	1,000	1,000	500	500	36홀 사용료	
목포시 궁도장	2시간 기준	2,000	1,000	1,000	1,000	500	500		
정구장 테니스장	2시간 기준	주간	2,000	1,500	1,000	1,500	1,200	800	
		야간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월 회원	30,000	22,500	10,000					
	월 강습	70,000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 “국가유공자 등”이란 조례 제16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21호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한다)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보호”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

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10.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1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 및 유기동물(이하 “반려·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영 제3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목표·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시 반려·유기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려·유기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반려·유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동물보호 담당 국·소장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4.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

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8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보호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

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소속 수의사(지정된 사람이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등록대행자 지정·관리) ① 시장은 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6일 이내에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대행업체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21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신적·경제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는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한다. 다만,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은 영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동물보호 비용의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동물의 생명보호, 유기동물 발생 예방, 동물복지증진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정 2019.12.23.>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8조 관련)**1. 일반 관리 기준****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10kg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300g
	10kg 이상	습식 또는 건식으로 600g
기타	-	해당 동물의 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라.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22호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

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4.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등을 줄이고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2.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장치 등 지원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4.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사업 지원
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취약계층 지원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내 집·가게·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23호

목포시 내 집·가게·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 집·가게·공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이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청결유지”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상시설물·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임) ① 내 집·가게·공장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② 시장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결유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제6조(청결유지 노력) ① 목포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가게·공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24호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목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营业을 말한다.
2. “일름맛집” (이하 “맛집” 이라 한다)이란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서비스, 향토성,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음식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음식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서비스, 향토성,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맛집 지정패 교부·부착
2. 지도 발간·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맛의 개발 및 서비스·위생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4. 위생용품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5. 그 밖에 맛집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으뜸맛집선정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제4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제6조 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신청 당시의 주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을 경우
5.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 경우와 폐업을 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격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폐 회수
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제7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 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명칭 등 사용의 금지) 맛집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시의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 및 이와 동일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맛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위원회) 맛집의 발굴·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으뜸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맛집의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 상품화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전문가
3. 요리 전문가, 맛칼럼니스트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언론인 및 시민단체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으뜸맛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25호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67조 제2항”을 “**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7장에 제30조의2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예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 <u>같은 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및 「 <u>같은 법 시행규칙</u>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u> ----- <u>같은 법 시행규칙</u> ----- ----- ----- ----- -----.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목포시장은 「 <u>법</u> 」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	제22조의2 (상인회의 등록취소) <u>①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 <u>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u>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 ----- <u>법</u> <u>제67조제2항</u> ----- ----- -----.

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

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
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
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
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26호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남녀 분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27호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 관리주체 및 기관에 방연마스크 비

치와 표지판을 설치토록 요청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시설물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 각호의 시설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 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28호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목관리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으로 한다.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정 2019.12.23.>

위험수목관리 지원 신청서

위 치	(지목 :)			
신청수목	수목종류		수 량	
	수목규격	평균수고 m / 평균흉고직경 cm		
신청사유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작 업 시 주의사항				
기 타 요구사항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장 전경·근경 사진대지 1부.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29호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개정 2019.12.23.>

공 원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 (제12조의2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 간
	최소 60분까지	60분 초과 후 30분마다		
소형	무료	1,000	3,000	50,000
대형	1,000	2,000	4,000	65,000

<비 고>

- 주차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요금의 면제·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과 그 밖에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바)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사)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아)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별표)

현 행

[별표2]

공 원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 (제12조의2 관련)

차 종	30분마다	당 일	체 류(숙박)	월 간(야간)
소 형	1,000원	3,000원	5,000원	50,000원
대 형	1,000원	4,000원	6,000원	65,000원

〈비 고〉

1. 주차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4월 ~ 10월 08:00 - 20:00
 - (나) 11월 ~ 3월 09:00 - 19:30
2.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3.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요금의 면제·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과 그 밖에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나)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바)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사)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아)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 정

[별표2]

공 원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 (제12조의2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 간
	최소 60분까지	60분 초과 후 30분마다		
소형	무료	1,000	3,000	50,000
대형	1,000	2,000	4,000	65,000

〈비 고〉

- 주차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4월 ~ 10월 08:00 - 20:00
 - 11월 ~ 3월 09:00 - 19:30
-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요금의 면제·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과 그 밖에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330호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획예산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붙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80호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2항” 을 “제63조제1항” 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71조” 를 “제79조제1항” 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87조” 를 “제86조”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항----- -----.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제79조 제1항-----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7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⑤ (생략)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제86조-----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81호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3. 사업비의 전액이 국·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4. 시설물 및 전산시스템의 유지, 보수, 일부 보완 등의 단순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심의대상) <u>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 1. ~ 3. (생략) <u><신설></u>	제4조 (심의대상) ① <u>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u> 1. <u>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u> 2. <u>「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u> 3. <u>사업비의 전액이 국·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u> 4. <u>시설물 및 전산시스템의 유지, 보수, 일부 보완 등의 단순용역</u> 5. <u>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u>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82호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88.10.25, 2019.12.23>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인 적 사 항	통 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위	동 통장	
		주 소						
		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대폰번호 자택 번호				
	장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반) 학과	학년 학과	
		통장과 의 관 계		성적개요		특기개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					종 류() 분기별 합산금액()			
건강보험료		원		지방세과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원		
② 가 족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학생과의 관계	비 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 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 ※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88.10.25, 2019.12.23>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소(도로명주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또는 학과
3. 성 명 : 한글 (남.여)
4.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성 적	장학생 추천 소견서
1. 평 균 : 점 2. 석 차 : / ▶ 전체 학생 기준 석차 기록	

타 장학금 중복 수혜여부 확인(20 년부터 20 년 현재까지)

(예시) - 2019년 000고 우수장학생 선정 000원 지급 또는 지급예정
- 2019년 000고 동문장학생 선정 000원 지급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년 일 월
 학교장 성명 (직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88.10.25, 2019.12.23>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인 적 사 항	통 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위	통장	
		주 소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공적개요						
	장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반)과 학년 학반과		
		통장과의 관 계		품 행		특기개요		
가 족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학 생 과의관계	비 고		
관 련 공 부 인 확	관련서류		확인일자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통반장 위·해촉대장							
	타장학금(학비보조금) 혜택여부							
동 장 종합의견								
위자를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23.>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학교명 및 학과명 학년	학교 학과 학년 반
성 명	(남 여)
생 년 월 일	
계 좌 번 호	(은행)

본인은 20 년도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 명 (인)

동 통장 성 명 (인)

확인자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u>	<u><삭 제></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별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전

[별지 제1호서식] <개정 88. 10. 25>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한글 (남 · 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년 월 일 (년 월)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한글 (남 · 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 개요

3. 가족사항

성 명	본인과의관계	연 령	직 업	비 고

4. 보호자 재산상황

부 동 산	동 산	연 수 인	기 타	비 고
원	원	원	원	

목포시 19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 약 서 1통

19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목 포 시 장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 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후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인 적 사 항	통 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위		동 통장	
		주 소							
		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대폰번호					
	장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반) 학과	학년 학반 학과		
		통장과의 관 계		성적개요		특기개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				종 류() 분기별 합산금액()					
건강보험료		원		지방세과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원			
② 가 족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학생과의 관계	비 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 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 ※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전

[별지 제2호서식] <개정 88.10.25>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학 교 명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 · 여)
한자

4.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성 격	품 행
1. 평균 점	1. 종 교
2. 석차	2. 사 상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3. 소 행
	4. 학 습 태 도

19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후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소(도로명주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또는 학과
3. 성 명 : 한글 (남.여)
4.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성 적	장학생 추천 소견서
1. 평 균 : 점	
2. 석 차 : /	
▶전체학생 기준 석차 기록	

타 장학금 중복 수혜여부 확인(20 년부터 20 년 현재까지)
(예시) - 2019년 000고 우수장학생 선정 000원 지급 또는 지급예정 - 2019년 000고 동문장학생 선정 000원 지급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년 일 월
 학교장 성명 (직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88.10.25>

서 약 서

목 포 시 장 귀하

1. 주 소

2. 성 명 (남 · 여) 생년월일 : 년 월 일

3. 학 교 명 학년 학과

본인은 목포시 19 년 통장자녀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
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연서 이에
서약합니다.

19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

보호자 성명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후 :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전

[별지 제4호서식] <개정 88.10.25>

목 포 시 통 장 자 녀 장 학 생 추 천 서

수 신 : 목포시장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한글 (남 · 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학년 학과
- 성 명 : (남 ·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사항

4. 재상상황

5. 동장의견

19 년 월 일
동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후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인 적 사 항	통 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위	통장
		주 소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공적개요					
	장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반) 학과	학년 학교반과
		통장과 의 관 계		품 행		특기개요	

가 족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학 생 과의관계	비 고

관 련 공 부 확	관련서류	확인일자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통반장 위·해촉대장				
	타장학금(학비보조금) 혜택여부				

동 장 종 합의견	
--------------	--

위자를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전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본 적

주 소

학교명 및 학년(학교)

성 명 (남 · 여)

생년월일 : 년 월 일

본인은 19 년 목포시통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①

보호자 주 소

성 명

본인과의 관계

①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후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학교명 및 학과명 학년	학교 학과 학년 반
성 명	(남 여)
생 년 월 일	
계 좌 번 호	(은행)

본인은 20 년도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 명 (인)

동 통장 성 명 (인)

확인자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83호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산정동 통·반명과 관할구역 란을 아래 표와 같이 조정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21	3	산정동 1040-115, 신촌로8번길 5-1 신촌로12번길 5,6,6-1,7,7-1,8, 신촌로14번길 5,5-1,6-1,7,8-1 신촌로16번길 6,7-2~3,8~9 산정로199번길 2
		4	신촌로8번길 3,3-1,5 신촌로12번길 1,1-1,2,2-1,3,3-1,4,4-1 신촌로14번길 1,1-1~2,2,2-1,3,3-1,4,4-1 신촌로16번길 2,2-1,4,4-1 신촌로 10-1~2,12,12-1,16

별표 동명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동명동	3	1	송도길12번길 3,3-1~4 송도길20번길 1,1-1~2,4-2~4,6,6-1~2 송도길 14,14-1~2,16,12-2
		2	수강로12번길 44
		3	삼학로 42,42-1, 송도길20번안길 3,3-1~2,5,7,7-1,9,13,13-1,11,11-1~4,13,15,15-1,6 삼학로18번길 20,20-1~2,22, 수강로12번길 50,54-1~5
		4	송도길20번길 6,6-4,8-2,4,4-1~5, 송도길 18,18-1,20 삼학로18번길 12,12-1,16, 송도길 24-1
		5	삼학로 40, 삼학로18번길 23,23-1,21-1, 13,13-1,7,7-2~3,9,11,11-2~9,
	4	1	삼학로 39,39-1, 삼학로41번길 9-1~3,5,7,7-1,9,9-4~5, 11,11-1~2,
		2	삼학로 31, 삼학로35번길 5,9-1~2,11,15, 삼학로37번길 27,29,29-1~3,11-3,13, 15,15-1~2,17
		3	삼학로41번길 21,23,25,27,29 삼학로35번길 17,18,24,26 산정로37번길 28,30, 산정로47번길 29
	5	1	자유로 2,4,6,8, 자유로10번길 2,4 산정로47번길 24,26,28,30, 삼학로35번길 32
		2	산정로37번길 24, 산정로47번길 23 자유로10번길 8,10,12,14,16,18 삼학로41번길 22,24,26,28
		3	산정로37번길 16-6~11,18, 산정로47번길 15,16 자유로10번길 9,11,13,15,17
		4	산정로47번길 12,14,16,18 자유로20번길 2,4,6, 자유로10번길 1,3,5, 자유로 14,16,18
		5	산정로47번길 11,13,15, 산정로37번길 12,14,16,16-1~3 자유로20번길 8,10,12,14,16

별표 하당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1	1	쇳나루길 11, 27, 32, 36, 41, 43, 44, 54, 58, 68 하당로153번길 4, 7, 13, 14, 21, 21-1, 21-2
		2	쇳나루길 72, 74, 76, 78, 78-1, 80, 80-1, 82, 86, 88 하당로197번길 1, 3, 3-1, 3-3, 3-4, 3-5, 3-6, 3-8, 3-9, 3-10, 3-11, 5, 9, 9-1, 11 하당로 173, 177, 179, 179-1, 181, 181-1, 183, 185, 187-1, 189, 191-1, 195, 195-1
		3	하당로 115, 115-1, 117, 117-1, 117-2, 119, 119-1, 121, 123, 207, 207-1, 209, 209-1, 211, 215, 217, 219 백년대로231번길 6, 9, 12, 14, 14-1, 16, 19, 22, 24, 25 백년대로 221, 233
		4	하당로 131, 133, 135, 135-1, 137, 137-1, 139, 141, 143, 145, 145-1, 147, 147-1, 149, 149-1, 151, 151-1 백년대로231번길 26, 28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2	1	삼각로7번길 1, 3, 5, 5-1, 7, 7-1, 11, 11-1, 15, 15-1, 21, 23, 23-1, 25, 25-1, 27, 27-1, 29, 33
		2	하당로 122, 124, 124-1, 126, 126-1, 128, 130, 132, 134, 136, 142, 144, 144-1, 146, 148, 150, 152, 152-1 백년대로265번길 23
		3	삼각로7번길 4, 5, 6, 10, 12, 14, 16, 18, 24, 24-1, 24-2, 24-3, 24-4 백년대로265번길 15, 16, 18, 19, 20, 20-1, 21, 22
		4	삼각로 9, 13, 16, 17-1, 18, 19, 19-1, 19-2, 19-3 백년대로255번길 7, 9, 11, 13, 9, 13, 13-1, 14, 14-1, 14-2, 15, 16
	3	1	백년대로265번길 10, 12, 12-1, 12-2, 14, 14-1, 14-2, 14-3 백년대로273번길 8, 8-1, 8-2, 9, 9-1, 10, 10-1, 10-2, 11, 11-1, 12, 12-1
		2	백년대로279번길 7, 9, 9-1, 11, 11-1, 13 삼각로 27, 29, 33, 33-1, 35
		3	백년대로279번길 1, 5 백년대로 247, 249, 251, 253, 261, 265, 267, 271, 275 백년대로255번길 3, 4, 6
		4	삼각로 4, 10, 18, 20, 22, 32 하당로 114, 114-1, 116
	4	1	삼각로43번길 9, 10, 12, 16, 22, 24
		2	교육로 89, 91, 91-1, 93, 97
		3	하당로 172, 176, 178, 178-1, 180, 180-1, 180-2
		4	교육로 101, 105, 107, 109, 111, 111-1, 113, 115
	5	1	백년대로297번길 33, 34, 34-1, 35, 36, 37, 38, 38-1, 38-2, 38-3, 38-4, 38-5, 39, 41
		2	백년대로307번길 33-1, 33-2, 33-3, 33-4, 37, 37-1, 37-2, 37-3, 37-4, 37-5, 39, 39-1 하당로 188, 188-1, 194, 196, 196-1, 196-2, 198 교육로 108, 110, 112, 112-1, 116
		3	백년대로297번길 21, 22, 22-1, 22-2, 22-3, 23, 27, 27-1, 29, 31
		4	백년대로307번길 21, 21-1, 21-2, 21-3, 27 교육로 96, 98, 100, 102, 104, 106, 106-1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6	1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1동 101~312호)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1동 401~612호)
		2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1동 701~912호)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1동 1001~1212호) 백년대로337번길 35,39(비파1차아파트 101동 1301~1512호, 상가)
		3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2동 101~508호)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2동 601~1008호)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2동 1101~1508호)
		4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3동 101~314호)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3동 401~614호)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3동 701~914)
		5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3동 101~1214호) 백년대로337번길 35(비파1차아파트 103동 1301~1510호)
	7	1	백년대로337번길 23,25(비파2차아파트 201동 101~509호, 상가)
		2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1동 601~1009호)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1동 1101~1508호)
		3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2동 101~509호)
		4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2동 601~1009호)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2동 1101~1508호)
	8	1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3동 101~508호)
		2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3동 601~1008호)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3동 1101~1508호)
		3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4동 101~508호)
		4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4동 601~1008호)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4동 101~1508호)
	9	1	백년대로323번길 20(비파3차아파트 상가동) 백년대로337번길 9(비파3차아파트 301동 101~1504호) 백년대로337번길 11(비파3차아파트 상가동)
		2	백년대로337번길 9(비파3차아파트 301동 105~1508호)
		3	백년대로337번길 9(비파3차아파트 301동 109~1512호)
		4	백년대로337번길 9(비파3차아파트 302동 101~1504호)
	10	1	백년대로337번길 9(비파3차아파트 302동 105~1508호)
		2	백년대로337번길 9(비파3차아파트 302동 109~1512호)
		3	백년대로337번길 9(비파3차아파트 303동 101~1503호)
		4	백년대로337번길 9(비파3차아파트 303동 104~1507호) 백년대로337번길 9(비파3차아파트 303동 108~1510호)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11	1	하당로197번길 2,2-1,2-2,4,6,8,8-1 쇳나루길 94,98,98-1,100,100-2,100-3,100-4,100-5, 102, 104, 106, 106-1,108,108-1
		2	하당로205번길 3, 5,7,7-1,7-2,9,9-1,13,13-1,15 하당로199,201,204-1 하당로213번길 17
		3	하당로221번길 13,15,17,19,19-1,21,21-1,23 하당로213번길 3,3-1,5,5-1,5-2,7,7-1,7-2,9,11,12,13,14, 14-1,16,1 6-1,18,18-1,20
		4	하당로205번길 4,4-1,4-2,6,6-1,6-2,6-3,12,18 하당로207,207-1,209,209-1,211,215
	12	1	하당로 227번길 15,15-1,16,16-1,17,17-1,18,19,19-1,20,20-1, 20-2, 21,22,23,23-1,25, 25-1,25-2,26, 26-1,26-2
		2	비파로 151,153,155,155-1,157,159,161,161-1,163,165 하당로221번길 12,14,16,16-1,18,20,20-1,22,24,24-1 쇳나루길 116,120,122
		3	비파로 135,135-1,137,139,141,143,143-2,145,147,149 하당로 223,225,229,231,233,233-1 하당로221번길 2,4,4-1,6,8,10,10-1,10-2
		4	하당로227번길 3,3-1,4,5,5-1,6,7,8,8-1,9,10,11,11-1,12,13,14
	13	1	삼각로39,42 삼각로43번길 1,2,3,3-1,4,5,6,7,7-1 백년대로279번길 10,10-1,12,14 교육로77,81,83,83-1,85,87 백년대로281,285
		2	백년대로297번길 7,11,13,15,17,17-1,17-2 교육로84,86,88,90,94
		3	백년대로291,293,295 백년대로297번길 3,3-1,12,12-1,12-2,14,14-1,14-2,14-3,16,16-1 백년대로307번길 11-1,11-2,13-1,13-2,15,15-1,15-2,17,19,19-1
		4	백년대로297번길 8 백년대로307번길 7, 7-1, 7-2, 7-3, 9, 9-1, 9-2, 9-3, 9-4 백년대로 303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14	1	하당로 214번길 16,18,20,22,22-1,22-2 하당로 207번길 22-1,30,30-1,34-7,34-8,34-9 백년대로 214번길 16-1,16-2 삼각로 43번길 9
		2	백년대로 307번길 34,34-1,34-2,34-3,34-4,34-6,40 양을로 397번길 90 하당로 202,204,204-1,204-2,204-3
		3	하당로 206,208,210,210-1,212,206-2 하당로 214번길 6,6-1,6-2,6-3
		4	백년대로 323번길 21,23,25,27,27-1,31,33,35,37,37-1,41 하당로 214번길 3,5,7,9,17,17-1,19 하당로 214
		5	백년대로 307번길 6,11-1,12,12-1,13,13-1,14,14-1,15-1,15-2, 16, 16-1,16-2,19,20,20-1,20-2 백년대로 315번길 11,11-1,12,12-1,12-2,13,13-1,13-2,6,9 백년대로 323번길 7,17,17-1,17-2,17-3,17-4,15,15-1,16,16-1, 백년대로 313, 319
	15	1	백년대로 325,327,331,331-1,335,339 백년대로 337번길 6,6-14,10,10-1,14,16,16-1 비파로 91,95,99,101,103,105
		2	비파로 107,111,113,115,117,119,121 백년대로 337번길 22,22-1,24,24-1,26,30,32-1,24,26,28,42 하당로 236
		3	비파로 116,118,120,122,124,128 하당로 244,246,248,252,256 비파로 124번길 1,3,5,6,6-1,6-2,7,8,11,14 옥암로 117,119,121,129 비파로 116번길 3,7-1,7-2,15,16-1,16-2 번영로 120,121
		4	비파로 116번길 66,6-1,6-2,14,14-1,14-2 하당로 108번길 5,5-1,6,6-1,6-2,7,7-1,8,13,14,16,16-1,18 비파로 110,114,104,106 옥암로 95,101,103 번영로 111,113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16	1	쇤나루길 126,130,132,138 양을로 532번길 37 비파로 162 번영로 167
		2	하당로241번길 21,22,24,25,25-1,26,27,28,29,31
		3	비파로 152,154,156,158,160 번영로 162 양을로 532번길 29,32,34,36 양을로 502
		4	양을로 508(센트럴 팰리체 101동 201~1410호)
	17	1	양을로 512,516,518,520 양을로 532번길 12,16,16-1,17,17-1,18,19,20,21,22,23,23-1,24,26
		2	하당로 241번길 11,12,13,13-1,15,16,16-1,17,17-1,19 비파로 140,142,144,146,148,148-1,150 번영로 142
		3	양을로 522,522-1,526,528,534 양을로 532번길 1,2,3,4,8,10,12,12-1,14
		4	하당로 24,237,241,251,251-1,255-1,255 번영로 138,139,139-1,140,140-1,142,144,144-1 하당로 241번길 7,9 비파로 136,138,138-1
	18	1	석현로 42(광명샤인빌아파트 101동 101~1504호, 상가)
		2	" (광명샤인빌아파트 101동 105~1508호)
		3	" (광명샤인빌아파트 102동 101~1504호)
		4	" (광명샤인빌아파트 102동 105~1508호)
		5	" (광명샤인빌아파트 103동 101~1504호)
		6	" (광명샤인빌아파트 103동 105~1508호)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19	1	석현로45번길 19(수창해뜨레 101동 101~1404호)
		2	석현로45번길 19(수창해뜨레 101동 105~1506호) 석현로 1-1,5,7,9,13,13-1,15,21,27,29,31,37,41,45,51 석현로25번길 6,8,10,15,16,20,20-5 석현로35번길 1,3,4,7,11,15,16,21 석현로45번길 7, 9, 15, 16 옥암로 200, 200-1
		3	석현로45번길 19(수창해뜨레 102동 101~1504호)
	20	1	옥암로 186번길 20-1(대송베스트빌아파트 101동 101~1504호)
		2	옥암로 186번길 20-1(대송베스트빌아파트 101동 105~1508호)
		3	석현로 18(스타팰리스 101동), 18-2(스파팰리스 102동)
		4	석현로 12, 18-1(스타팰리스 103동), 24, 28, 46, 48 옥암로 182, 190 옥암로186번길 1, 5, 9, 11, 13(스파팰리스 104동),19, 19-1, 20, 30-7, 30-11
	21	1	옥암로 165(광명샤인빌아파트 201동)
		2	옥암로 165(광명샤인빌아파트 202동)
		3	옥암로 165(광명샤인빌아파트 203동)
		4	옥암로 165(광명샤인빌아파트 204동)
		5	옥암로 165(광명샤인빌아파트 상가) 쇤나루길 145,153,158,165,167,169, 172,175,175-1,177,177-1,178,183 옥암로 143,145,147,149,151,155,159,165,167,173,179,181,187,191, 195, 197,199,199-1
	22	1	옥암로 174(빌리앙뜨아파트101동)
		2	" 174(빌리앙뜨아파트102동)
		3	" 174(빌리앙뜨아파트103동)
		4	" 174(빌리앙뜨아파트104동)
		5	" 174(빌리앙뜨아파트105동)
	23	1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1동)
		2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2동, 상가동)
		3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3동)
		4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5동) 석현로59번길 3, 5, 7, 25

별표 신흥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1	1	백년대로 232, 234, 238, 244, 246, 250, 252, 254, 256 하당로 103, 101-1, 101, 99, 90, 94, 94-1, 98-1, 100, 102, 96, 98 입암로 11-1, 11, 5, 3, 1, 7-1 입암로4번길 2, 4, 4-1, 12
		2	입암로6, 6-2, 8, 10, 10-1, 12, 6-1 입암로4번길 3, 3-1, 3-2, 5, 5-1, 5-2, 7, 7-1, 7-2, 9, 9-1, 9-2, 11-1, 11-2 백년대로256번길 10, 10-1, 10-2, 12-1, 12-2, 14, 14-1, 14-2, 16, 18, 18-1, 8, 16-1
		3	백년대로256번길 7, 9-1, 9, 11, 11-1, 13, 13-1, 15, 15-1, 17 입암로 16, 18, 18-1, 20, 22 입암로20번길, 4, 4-1, 6, 6-1, 8, 8-1, 10, 10-1, 12, 12-1
		4	백년대로 258, 258-1, 260, 262-1, 262 백년대로266번길 2, 10-1, 12, 14, 16, 18 입암로 17, 19, 21 입암로20번길 1, 1-1, 3, 5, 7, 9, 11
	2	1	하당로 77, 66, 62, 56, 56-1, 58-1, 60, 58, 58-2, 46, 48, 50, 52, 50-1, 52-1 하당로68번길 8, 10, 10-1 하당로60번길 3, 7, 4, 8, 6, 하당로44번길 3-5, 3-3, 3-1, 3, 3-4, 3-2
			하당로68번길 14, 16, 18, 20, 20-1, 12 하당로60번길 15, 13-1, 13, 11, 9, 11-1, 10, 10-1, 10-2, 18 하당로30번길 29, 27, 23, 25 하당로34번길 22, 20 하당로44번길 5-4, 5-3, 5-2, 5-1, 5, 13
		3	하당로30번길 17, 15-1, 13, 19, 15, 5-1, 3, 11, 9, 7, 5, 1 하당로34번길 10, 14, 16, 12, 13, 11, 9-1, 9, 7, 5-2, 5-1, 3, 2, 4, 4-1, 6, 8, 5-3, 5 하당로44번길 8, 14, 10, 6, 6-1, 4, 4-1, 4-2 하당로 36, 36-1, 38-1, 38, 40
		4	교육로 5, 17, 15, 11, 13-1, 13, 23, 21, 19 교육로41번길 5, 3 하당로30번길 8, 10, 10-1, 12, 14, 14-1, 16, 18-1, 18-2, 18 하당로44번길 18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28	1	백년대로 270, 272, 274 백년대로266번길 11, 11-1, 13, 7, 9-1, 9 백년대로274번길 9-1, 9, 13-2, 13, 11-1, 13-1, 10, 10-1, 12, 14-1, 7, 14 백년대로280번길 6, 8, 10, 10-1, 10-2, 12-1, 14, 24 입암로 34, 34-1, 36, 33
		2	백년대로 282, 284, 288 백년대로280번길 23, 21-1, 21, 17, 15, 19, 13, 11-1, 11, 9, 7 교육로 63, 59, 55, 53, 51-1, 49, 51 입암로42번길 15-1, 11, 15, 12, 12-1, 16, 18, 14, 14-1, 20, 22, 4, 8
		3	입암로42번길 21, 19-1, 19, 17, 17-1 교육로 45-1, 교육로 45 교육로41번길 25, 21, 21-1 (28통 3반 일부- 954번지)
		4	입암로42번길 24, 26, 26-1, 28-1, 28-3, 28, 28-2 백년대로266번길 31-3, 31, 31-2, 31-1, 25, 25-1, 25-2, 25-3 백년대로280번길 37, 35-1, 33-1, 33, 31, 29-1, 29, 25, 35, 27, 28, 30, 36, 32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35	1	평화로83번길 16, 101동 801호~4102호, 4201호(상동, 목포평화광장에메랄드퀸), 상가 298세대 중 101동 : 165세대 (상가동 1~7F) .. 대피소
		2	평화로83번길 16, 101동 803호~4105호(상동, 목포평화광장에메랄드퀸), 298세대 중 101동 : 165세대 (상가동 1~7F) .. 대피소
		3	평화로83번길 16, 102동 801호~4102호, 4201호(상동, 목포평화광장에메랄드퀸) 298세대 중 102동 : 133세대
		4	평화로83번길 16, 102동 804호~4104호, 4203호(상동, 목포평화광장에메랄드퀸) 298세대 중 102동 : 133세대
	36	1	입암로4번길 13, 13-1, 15, 31, 27, 21 입암로20번길 14, 16, 16-1, 14-1, 19-1, 19, 15, 13, 25, 24, 18, 20, 22, 22-1, 18-3, 18-1, 18-2 백년대로256번길 20-1, 20, 22, 22-2, 22-1, 19, 19-1, 21-1, 21 백년대로266번길 20, 22, 26, 24-1 (1통 3반)
		2	입암로4번길 14, 16, 18, 20, 22, 26, 30, 30-1, 26-1, 28, 36-1 하당로 82, 84, 86, 88, 82-1, 68, 76, 78, 76-1, 74-1, 72, 74, 3, 36, 9 (1통 4반)
		3	입암로42번길 30-1, 30, 30-2, 31, 29, 27, 25-1, 23, 25 하당로68번길 21, 19, 17, 15-1, 13, 19-1, 15, 23 교육로41번길 19, 17, 15-1, 15, 13 (28통 3반 - 951, 955번지)
		4	교육로 29, 27, 28, 30, 37, 38, 35, 40 교육로41번길 8, 6, 24, 22 장미로 5, 3, 1 부흥로 1, 3, 7, 17 비파로43번길 37, 42-1, 40-1, 40, 36, 42, 46 비파로51번길 41-1, 37, 35, 41, 39, 44, 46 신흥로 2, 2-1, 4, 10, 10-1, 12, 12-1, 14, 14-1, 16, 8 (2통 4반)

별표 부주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부주동	5	1	후광대로105번길 27, 25, 23, 17, 17-2, 17-1, 11-8, 8, 4, 17-8, 17-5, 13, 11-6 후광대로105번안길 13, 25-3, 25-1, 21, 33, 33-6, 33-2, 7, 24, 24-1, 26, 28, 30-1, 34, 2, 5, 3, 15-3, 15-4, 25-7, 17, 25-6, 25-8, 25-4, 33-7, 33-3, 33-8, 22, 30 정의로 2, 4-3, 4-13, 14, 16, 12-3, 22, 24, 26-4, 26-8, 26-14, 9, 10, 8, 6, 4-10, 4-5, 12-5, 26-2 옥암동 1179-0, 1/1180/1181-1, 3, 7~10/1182-1~2, 4, 6, 9, 11, 12, 15/1183-1, 4, 8/1184-3, 5, 8, 9, 12/1186-1~2/1187-1, 6~8/1188-3, 6~8/1189-1~11/1190-8,9 /1191-1~7/1192-4/1193-4/1194/1195-3/1196-3~5 /1197-1~10/1205
		2	정의로 29, 30, 34-12 후광대로143번길 7, 28, 31, 12-5, 12-4, 12-6, 12-8, 8, 51-2, 51-1, 8-6, 3, 26, 12-1, 6, 8-14, 8-16 후광대로143번안길 1, 3, 2, 4, 8-16, 8-7, 12, 12-8, 8-7, 16, 16-10, 40, 50, 38-1, 22-9, 22-7, 47, 35, 6, 8-2, 12-12, 8-9, 14, 12-9, 16-1, 22, 24, 36, 22-5,49, 47-1, 27, 29, 31, 35-1, 37 옥암동 1189-12~21/1197-11/ 1202-4, 5, 7/1203/1204-1, 2, 4/ 1206-3/ 1207-4, 5/ 1208-2~5/1209-5, 7, 8, 10, 12/ 1210-1, 5, 8~10/1211-1, 3, 6~9, 12/1212-3, 4~6, 8, 9, 11, 12/ 1213-3~7/1214/1216/1217-2, 3, 5, 6, 9~13/1218-2~7, 9, 14/1219-1, 5~9/1220-1, 4, 6, 7/1221-1~6/ 1222-1~6 /1223-1, 2/1224/1368
	14	1	당가두로14번길 44-1, 46-4, 24-7, 26, 46, 50, 50-4, 50-6, 50-8, 20-7, 20-5, 20-3, 20, 24, 24-6, 46-7, 46-3, 42, 46-6, 46-8, 24-5, 24-3, 24-1, 28, 32, 34, 36, 38, 40, 20-1, 24-2, 24-4, 46-5 옥암동1085-2/1138/1147-1~3/1154/1155-0, 1/1156/1157-12, 15/ 1158-15/1369-2, 3
		2	당가두로 16, 18, 18-1, 20, 22, 22-1, 24, 26, 4 당가두로14번길 43, 45, 47, 47-1, 49, 51, 2, 50-1, 4, 6, 10, 10-1, 12, 14, 16, 20-2, 20-4, 20-6, 20-8, 50-3, 50-7, 50-5, 5, 3-4, 3-8, 3-12, 7-11, 7-3, 7-5, 7-7, 7-9, 3-14 녹색로 287 옥암동 1143-3~5/1159-4/1159-10/1160/1162-2, 4, 7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부주동	26	1	남악1로52번길, 82, 301~302동(옥암동, 골드디움3차아파트)
		2	남악1로52번길, 82, 303~306동(옥암동, 골드디움3차아파트)
		3	남악1로52번길, 82, 307~309동(옥암동, 골드디움3차아파트)
		4	남악1로52번길 58, 68-3 남악1로52번나길 1, 1-1, 31-11, 45-3, 45-2, 45-1, 45, 7, 31-9, 31-7, 31-5, 9-1, 5, 31-10, 35-7, 35-5, 35-1, 31-4, 31-6, 35-8, 43, 35-2, 35-4, 35-6, 31-3, 31-1, 35-3, 35, 31-2, 41, 39 남악1로42번길 59-6 옥암동 1246-1, 2/1261-1/1262-10/1269/1294~1296
	30	1	당가두로 36, 34-2, 34-1, 34, 32, 30-1, 30, 28 당가두로38번길 8-24, 8-28, 8-30, 8-36, 4-27, 4-17, 4-15, 4, 8-20, 4-23 옥암동 1143-1, 2, 6/1163-1~4, 7, 10, 13, 15, 16/1164
		2	당가두로38번길 8-3, 12-2, 12-4, 48-7, 48-5, 18-3, 48-1, 8-25, 8-23, 8-19, 8-17, 8-15, 8-9, 8-5, 12-6, 12-8, 12-10, 50 옥암동 1143-7/1166-18
		3	당가두로38번길 12-1, 16-2, 16-4, 48-10, 48-2, 48-4, 48-6, 48-8, 16-6, 16-8, 16-10, 12-9, 12-7, 12-5, 44-7, 44-5, 44-3, 44-1, 46 옥암동 1143-8/1167-7, 11/1168-2
		4	당가두로38번길 22, 16-1, 24, 26, 28, 16-5, 44-10, 32, 42, 44-6, 44-8, 23, 30, 16-9, 16-3, 36, 44-2, 44-4 옥암동 1143-9~11/1169-6, 9, 11/1170-3, 4, 6~8/1171
	31	1	후광대로 110, 114, 116, 128, 134 남악1로 56, 48, 60 남악1로52번길 7, 11-4, 23-6, 35-7, 2, 6-3, 8, 10, 12-4, 6-9, 6-5, 26, 28, 11-5, 23-5, 31-7, 31-5, 31-3, 27, 35-7 남악1로42번길 1, 5 남악1로52번가길 2, 2-3, 2-5, 2-7, 2-9, 2-11, 2-13, 9, 2-6, 11, 3, 8, 10, 10-1 옥암동1225-4, 5/1226/1227-2, 3/ 1228-1, 2, 4, 5/1230-1, 2, 4/1231/1232/1233-1~3/1234-1, 2/1235-2, 4, 5/1236-1, 4/1237-2, 6/1239/1240-3, 4/1247-5~10/1250-1, 10, 11/1265/ 1281~1285/1297/1367
		2	남악1로52번가길 2-8, 2-10, 17-5, 13, 17-8, 19-9, 17, 17-4, 17-6, 17-3, 15, 19-11, 19-7, 19-3, 12, 14, 16, 16-1, 18 옥암동 1253-7/1254-5, 7, 9/1266-9/1267/1286/1287/1291
		3	남악1로52번길 38, 40 남악1로52번가길 19-10, 19-4 남악1로52번나길 4-12, 4-8, 4-6, 4-4, 2, 4-11, 4-9, 4-7, 4-5, 4-3, 8-2, 8-6, 8-8, 6, 8-9, 8-7, 8-5, 8-3, 8-1, 8, 12 옥암동 1250-14, 16/1255-7/1257-8~10/1288
		4	남악1로52번가길 21, 26, 22, 30 남악1로52번나길 12-9, 12-1, 16, 11, 27, 15, 13, 24, 21, 19, 22 옥암동 1259-1~3/1264-2, 3, 5, 8/1268-2, 3, 5, 6, 8/1289/1290/1292/129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21통	3	산정동 1040(삭제) ,1040-115 신촌로8번길 5-1 신촌로12번길 5,6,6-1,7,7-1,8 신촌로14번길 5,5-1,6-1,7,8-1 신촌로16번길 6,7-2~3,8~9 산정로186번길 3(삭제) 산정로199번길 2	21통	3	산정동 1040-115 신촌로8번길 5-1 신촌로12번길 5,6,6-1,7,7-1,8 신촌로14번길 5,5-1,6-1,7,8-1 신촌로16번길 6,7-2~3,8~9 산정로199번길 2
		4	산정동 1040(삭제) 신촌로8번길 3,3-1,5 신촌로12번길 1,1-1,2,2-1,3,3-1,4,4-1 신촌로14번길 1,1-1~2,2,2-1,3,3-1,4,4-1 신촌로16번길 2,2-1,4,4-1 신촌로 10-1~2,12,12-1,16 산정로186번길 3(삭제)		4	신촌로8번길 3,3-1,5 신촌로12번길 1,1-1,2,2-1,3,3-1,4,4-1 신촌로14번길 1,1-1~2,2,2-1,3,3-1,4,4-1 신촌로16번길 2,2-1,4,4-1 신촌로 10-1~2,12,12-1,16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동명동	2	1	송도길12번길 3,3-1~4 송도길20번길 1,1-1~2,4-2~4,6,6-1~2 송도길 14,14-1~2,16,12-2	3	1	송도길12번길 3,3-1~4 송도길20번길 1,1-1~2,4-2~4,6,6-1~2 송도길 14,14-1~2,16,12-2
		2	수강로12번길 44		2	수강로12번길 44
		3	삼학로 42,42-1, 송도길20번안길 3,3-1~2,5,7,7-1,9,13, 13-1,11,11-1~4,13,15,15-1,6 삼학로18번길 20,20-1~2,22, 수강로12번길 50,54-1~5		3	삼학로 42,42-1, 송도길20번안길 3,3-1~2,5,7,7-1,9,13, 13-1,11,11-1~4,13,15,15-1,6 삼학로18번길 20,20-1~2,22, 수강로12번길 50,54-1~5
		4	송도길20번길 6,6-4,8-2,4,4-1~5, 송도길 18,18-1,20 삼학로18번길 12,12-1,16, 송도길 24-1		4	송도길20번길 6,6-4,8-2,4,4-1~5, 송도길 18,18-1,20 삼학로18번길 12,12-1,16, 송도길 24-1
		5	삼학로 40, 삼학로18번길 23,23-1,21-1, 13,13-1,7,7-2~3,9,11,11-2~9,		5	삼학로 40, 삼학로18번길 23,23-1,21-1, 13,13-1,7,7-2~3,9,11,11-2~9,
	3	1	삼학로 39,39-1, 삼학로41번길 9-1~3,5,7,7-1,9,9-4~5, 11,11-1~2,	4	1	삼학로 39,39-1, 삼학로41번길 9-1~3,5,7,7-1,9,9-4~5, 11,11-1~2,
		2	삼학로 31, 삼학로35번길 5,9-1~2,11,15, 삼학로37번길 27,29,29-1~3,11-3,13, 15,15-1~2,17		2	삼학로 31, 삼학로35번길 5,9-1~2,11,15, 삼학로37번길 27,29,29-1~3,11-3,13, 15,15-1~2,17
		3	삼학로41번길 21,23,25,27,29 삼학로35번길 17,18,24,26 산정로37번길 28,30, 산정로47번길 29		3	삼학로41번길 21,23,25,27,29 삼학로35번길 17,18,24,26 산정로37번길 28,30, 산정로47번길 29
	4	1	자유로 2,4,6,8, 자유로10번길 2,4 산정로47번길 24,26,28,30, 삼학로 35번길 32	5	1	자유로 2,4,6,8, 자유로10번길 2,4 산정로47번길 24,26,28,30, 삼학로 35번길 32
		2	산정로37번길 24, 산정로47번길 23 자유로10번길 8,10,12,14,16,18 삼학로41번길 22,24,26,28		2	산정로37번길 24, 산정로47번길 23 자유로10번길 8,10,12,14,16,18 삼학로41번길 22,24,26,28
		3	산정로37번길 16-6~11,18, 산정로 47번길 15,16 자유로10번길 9,11,13,15,17		3	산정로37번길 16-6~11,18, 산정로 47번길 15,16 자유로10번길 9,11,13,15,17
		4	산정로47번길 12,14,16,18 자유로20번길 2,4,6, 자유로10번길 1,3,5, 자유로 14,16,18		4	산정로47번길 12,14,16,18 자유로20번길 2,4,6, 자유로10번길 1,3,5, 자유로 14,16,18
		5	산정로47번길 11,13,15, 산정로37번길 12,14,16,16-1~3 자유로20번길 8,10,12,14,16		5	산정로47번길 11,13,15, 산정로37번길 12,14,16,16-1~3 자유로20번길 8,10,12,14,16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1	1	썩나루길 11, 썩나루길 27	1	1	썩나루길 11,27,32,36,41,43,44,54,58,68 하당로153번길 4,7,13,14,21,21-1,21-2
		2	썩나루길 72, 74, 76, 78, 78-1, 80, 80-1, 82, 86, 88 하당로197번길 3, 3-1, 3-3, 3-4, 3-5, 3-8, 3-9, 3-10, 5, 9, 9-1,11 하당로 177, 179-1, 181, 181-1, 185, 187-1, 189, 191-1		2	썩나루길 72, 74, 76, 78, 78-1, 80, 81-1 82, 86, 88 하당로197번길 1, 3, 3-1, 3-3, 3-4, 3-5 3-6, 3-8, 3-9, 3-10, 3-11, 5, 9, 9-1,11 하당로 173, 177, 179, 179-1, 181, 181-1, 183, 185, 187-1, 189, 191-1, 195, 195-1
		3	하당로213번길 5, 5-1, 5-2, 7, 7-1, 7-2, 9, 11, 13, 17(삭제) 하당로205번길 3, 3-1, 4, 4-1, 4-2, 6, 6-1, 6-2, 6-3, 7, 7-1, 7-2, 9, 9-1, 13, 13-1, 15, 12, 18(삭제) 썩나루길 100-2, 100-3, 100-4, 100-5, 102, 104, 106, 106-1, 108, 108-1(삭제) 하당로221번길 1, 3, 3-1, 3-2, 3-3(삭제) 하당로 115, 115-1, 117, 117-1, 117-2, 119, 119-1, 121, 123, 207, 207-1,209, 209-1, 211, 215, 217, 219 백년대로231번길 6, 14, 14-1, 16, 22, 24 백년대로 233		3	하당로 115, 115-1, 117, 117-1, 117-2, 119, 119-1, 121, 123, 207, 207-1,209, 209-1, 211, 215, 217, 219 백년대로231번길 6, 9, 12, 14, 14-1, 16, 19, 22, 24, 25 백년대로 221, 233
		4	하당로 131, 133, 135, 135-1, 137, 137-1, 139, 141, 143, 145, 145-1, 147, 147-1, 149, 149-1, 151, 151-1		4	하당로 131, 133, 135, 135-1, 137,137-1 139, 141, 143, 145, 145-1, 147, 147-1, 149, 149-1,151, 151-1 백년대로231번길 26, 28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2	1	삼각로7번길 1, 3, 5, 5-1, 7, 7-1, 11, 11-1, 15, 15-1, 21, 23, 23-1, 25, 25-1, 27, 27-1, 29, 33 하당로 122, 124-1, 126, 126-1, 128, 130, 132, 134, 136, 142, 144, 144-1, 146, 148, 150, 152, 152-1 백년대로265번길 23	2	1	삼각로7번길 1, 3, 5, 5-1, 7, 7-1, 11, 11-1, 15, 15-1, 21, 23, 23-1, 25, 25-1, 27, 27-1, 29, 33
					2	하당로 122, 124, 124-1, 126, 126-1, 128, 130, 132, 134, 136, 142, 144, 144-1, 146, 148, 150, 152, 152-1 백년대로265번길 23
		2	삼각로7번길 4, 6, 10, 12, 14, 24, 24-1, 24-2, 24-3, 24-4 백년대로265번길 15, 16, 18, 19, 20, 20-1, 21, 22 삼각로 9, 13, 16, 17-1, 18, 19, 19-1, 19-2, 19-3 백년대로255번길 9, 13, 13-1, 14, 14-1, 14-2, 15, 16		3	삼각로7번길 4, 5, 6, 10, 12, 14, 16, 18, 24, 24-1, 24-2, 24-3, 24-4 백년대로265번길 7, 9, 11, 13, 15, 16, 18, 19, 20, 20-1, 21, 22
					4	삼각로 9, 13, 16, 17-1, 18, 19, 19-1, 19-2, 19-3 백년대로255번길 9, 13, 13-1, 14, 14-1, 14-2, 15, 16
		3	백년대로265번길 10, 12, 12-1, 12-2, 4(삭제), 14-1, 14-2, 14-3 백년대로273번길 8, 8-1, 8-2, 9, 9-1, 10, 10-1, 10-2, 11, 11-1, 12, 12-1 백년대로279번길 7, 9, 9-1, 11, 11-1, 13 삼각로 27, 29, 33, 33-1, 35	3	1	백년대로265번길 10, 12, 12-1, 12-2, 14, 14-1, 14-2, 14-3 백년대로273번길 8, 8-1, 8-2, 9, 9-1, 10, 10-1, 10-2, 11, 11-1, 12, 12-1
					2	백년대로279번길 7, 9, 9-1, 11, 11-1, 13 삼각로 27, 29, 33, 33-1, 35
		4	백년대로279번길 1, 5 백년대로 247, 249, 251, 253, 261, 265, 267, 271, 275 백년대로255번길 3, 4, 6 삼각로 4, 10, 18, 20, 22, 32 하당로 114, 114-1, 116		3	백년대로279번길 1, 5 백년대로 247, 249, 251, 253, 261, 265, 267, 271, 275 백년대로255번길 3, 4, 6
					4	삼각로 4, 10, 18, 20, 22, 32 하당로 114, 114-1, 116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3	1	삼각로43번길 9, 10, 12, 16, 22, 24 교육로 89, 91, 91-1, 93, 97	4	1	삼각로43번길 9, 10, 12, 16, 22, 24
					2	교육로 89, 91, 91-1, 93, 97
		2	삼각로43번길 9(삭제) 하당로 172, 176, 178, 178-1, 180, 180-1, 180-2 교육로 101, 105, 107, 109, 111, 111-1, 113, 115		3	하당로 172, 176, 178, 178-1, 180, 180-1, 180-2
					4	교육로 101, 105, 107, 109, 111, 111-1, 113, 115
	3	3	백년대로297번길 33, 34, 34-1, 35, 36, 37, 38, 38-1, 38-2, 38-3, 38-4, 38-5, 39, 41 백년대로307번길 33-1, 33-2, 33-3, 33-4, 37, 37-1, 37-2, 37-3, 37-4, 37-5, 39, 39-1 하당로 188, 188-1, 194, 196, 196-1, 196-2, 198 교육로 108, 110, 112, 112-1, 116	5	1	백년대로297번길 33, 34, 34-1 35, 36, 37, 38, 38-1, 38-2, 38-3, 38-4, 38-5, 39, 41
					2	백년대로307번길 33-1, 33-2, 33-3, 33-4, 37, 37-1, 37-2, 37-3, 37-4, 37-5, 39, 39-1 하당로 188, 188-1, 194, 196, 196-1, 196-2, 198 교육로 108, 110, 112, 112-1, 116
		4	백년대로297번길 21, 22, 22-1, 22-2, 22-3, 23, 27, 27-1, 29, 31 백년대로307번길 21, 21-1, 21-2, 21-3, 27 교육로 96, 98, 100, 102, 104, 106, 106-1		3	백년대로297번길 21, 22, 22-1 22-2, 22-3, 23, 27, 27-1, 29, 31
					4	백년대로307번길 21, 21-1, 21-2, 21-3, 27 교육로 96, 98, 100, 102, 104, 106, 106-1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4	1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1동 101~312호)	6	1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1동 101~312호)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1동 401~612호)
		2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1동 401~612호)			
		3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1동 701~912호)		2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1동 701~912호)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1동 1001~1212호) 백년대로337번길 35,39 (비파1차아파트 101동 1301~1512호,상가)
		4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1동 1001~1212호)			
		5	백년대로337번길 35, 39(비파1차아파트 101동 1301~1512호,상가)			
	5	1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2동 101~508호)	3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2동 101~508호)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2동 601~1008호)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2동 1101~1508호)
		2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2동 601~1008호)			
		3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2동 1101~1508호)			
	6	1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3동 101~314호)	4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3동 101~314호)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3동 401~614호)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3동 701~914)
		2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3동 401~614호)			
		3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3동 701~914호)			
		4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3동 101~1214호)	5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3동 101~1214호)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3동 1301~1510호)
		5	백년대로337번길 35 (비파1차아파트 103동 1301~1510호)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 당 동	7	1	백년대로337번길 23,25 (비파2차아파트 201동 101~509호,상가)	7	1	백년대로337번길 23,25(비파2차아파트 201동 101~509호, 상가)
		2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1동 601~1009호)		2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1동 601~1009호) 백년대로337번길 23(비파2차아파트 201동 1101~1508호)
		3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1동 1101~1508호)			
	8	1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2동 101~509호)	8	3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2동 101~509호)
		2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2동 601~1009호)		4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2동 601~1009호)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2동 1101~1508호)
		3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2동 1101~1508호)			
	9	1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3동 101~508호)	8	1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3동 101~508호)
		2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3동 601~1008호)		2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3동 601~1008호)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3동 1101~1508호)
		3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3동 1101~1508호)			
	10	1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4동 101~508호)	8	3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4동 101~508호)
		2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4동 601~1008호)		4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4동 601~1008호)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4동 101~1508호)
		3	백년대로337번길 23 (비파2차아파트 204동 101~1508호)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11	1	백년대로323번길 20 (비파3차아파트 상가동)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1동 101~1504호) 백년대로337번길 11 (비파3차아파트 상가동)	9	1	백년대로323번길 20 (비파3차아파트 상가동)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1동 101~1504호) 백년대로337번길 11 (비파3차아파트 상가동)
		2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1동 105~1508호)		2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1동 105~1508호)
		3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1동 109~1512호)		3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1동 109~1512호)
	12	1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2동 101~1504호)	10	4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2동 101~1504호)
		2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2동 105~1508호)		1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2동 105~1508호)
		3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2동 109~1512호)		2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2동 109~1512호)
	13	1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3동 101~1503호)		3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3동 101~1503호)
		2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3동 104~1507호)		4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3동 104~1507호)
		3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3동 108~1510호)			백년대로337번길 9 (비파3차아파트 303동 108~1510호)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14	1	하당로197번길 2, 2-1,2-2,4,6,8,8-1 쇳나루길 94,98,98-1,100,100-2,100-3, 100-4,100-5, 102, 104, 106, 160-1 108,108-1 하당로205번길 5,7,7-1,7-2,9,9-1,13,13-1,15 하당로199,201,204-1 하당로213번길 17	11	1	하당로197번길 2, 2-1,2-2,4,6,8,8-1 쇳나루길 94,98,98-1,100,100-2, 100-3,100-4,100-5, 102, 104, 106, 106-1,108,108-1
					2	하당로205번길 3, 5, 7, 7-1, 7-2, 9,9-1,13,13-1,15 하당로199,201,204-1 하당로213번길 17
		2	하당로221번길 13,15,17,19, 19-1,21,21-1,23 하당로213번길 3,3-1,5,5-1, 5-2,7,7-1,7-2,9,11,12,13,14,14-1 ,16,1 6-1,18,18-1,20 하당로205번길 4,4-1,4-2, 6, 6-1,6-2,6-3,12,18 하당로 207,207-1,209, 209-1, 211,215		3	하당로221번길 13,15,17,19, 19-1,21,21-1,23 하당로213번길 3,3-1,5,5-1, 5-2,7,7-1,7-2,9,11,12,13,14,1 4-1,16,1 6-1,18,18-1,20
					4	하당로205번길 4, 4-1, 4-2, 6, 6-1,6-2,6-3,12,18 하당로 207,207-1,209, 209-1, 211,215
		3	비파로 151,153,155,155-1,157,159,161,1 61-1,163,165 하당로 227번길 15,15-1,16, 16-1,17,17-1,18,19,19-1,20,20-1, 20-2,21,22,23,23-1,25,25-2,26, 26-1,26-2 하당로221번길 12,14,16,16-1,18,20,20-1,22,24 쇳나루길 116,120,122	12	1	하당로 227번길 15,15-1,16, 16-1,17,17-1,18,19,19-1,20, 20-1,20-2,21,22,23,23-1,25, 25-1, 25-2,26, 26-1,26-2
					2	비파로 151,153,155, 155-1, 157,159, 161,161-1,163,165 하당로221번길 12, 14, 16, 16-1,18,20,20-1,22,24, 24-1 쇳나루길 116,120,122
		4	비파로 135,135-1,137,139, 141,143,143-2,145,147,149 하당로 223,225,229,231,233, 233-1 하당로221번길 2,4,4-1,6,8,10, 10-1,10-2 하당로227번길 3,3-1,4,5,5-1,6,7,8, 8-1,9,10,11,11-1,12,13,14		3	비파로 135,135-1,137, 139,141, 143,143-2,145, 145-1, 147,149 하당로 223,225,229,231, 233, 233-1 하당로221번길 2,4,4-1,6,8,10, 10-1,10-2
					4	하당로227번길 3,3-1,4,5,5-1,6,7, 8,8-1,9,10, 11,11-1,12,13,14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15	1	삼각로39,42 삼각로43번길 1,2,3,3-1,4,5,6,7,7-1 백년대로279번길 10,10-1,12,14 교육로77,81,83,83-1,85,87 백년대로281,285		13	1	삼각로39,42 삼각로43번길 1,2,3,3-1,4,5,6,7,7-1 백년대로279번길 10,10-1,12,14 교육로77,81,83,83-1,85,87 백년대로281,285	
		2	백년대로297번길 7,11,13,15,17,17-1,17-2 교육로84,86,88,90,94			2	백년대로297번길 7,11,13,15,17,17-1,17-2 교육로84,86,88,90,94	
		3	백년대로291,293,295 백년대로297번길 3,3-1,12,12-1, 12-2,14,14-1,14-2,14-3,16,16-1 백년대로307번길 11-1,11-2,13-1, 13-2,15,15-1,15-2,17,19,19-1			3	백년대로291,293,295 백년대로297번길 3,3-1,12,12-1, 12-2,14,14-1,14-2,14-3,16,16-1 백년대로307번길 11-1,11-2,13-1, 13-2,15,15-1,15-2,17,19,19-1	
		4	백년대로297번길 8 백년대로307번길 7, 7-1, 7-2, 7-3, 9, 9-1, 9-2, 9-3, 9-4 백년대로 303			4	백년대로297번길 8 백년대로307번길 7, 7-1, 7-2, 7-3, 9, 9-1, 9-2, 9-3, 9-4 백년대로 303	
	16	1	하당로 214번길 16,18,20,22,22-1,22-2 하당로 207번길 22-1,30,30-1,34-7,34-8,34-9 백년대로 214번길 16-1,16-2 삼각로 43번길 9		14	1	하당로 214번길 16,18,20,22,22-1,22-2 하당로 207번길 22-1,30,30-1,34-7,34-8,34-9 백년대로 214번길 16-1,16-2 삼각로 43번길 9	
		2	백년대로 307번길 34,34-1,34-2,34-3,34-4,34-6,40 양을로 397번길 90 하당로 202,204,204-1,204-2,204-3			2	백년대로 307번길 34,34-1,34-2,34-3,34-4,34-6,40 양을로 397번길 90 하당로 202,204,204-1,204-2,204-3	
		3	하당로 206,208,210,210-1,212,206-2 하당로 214번길 6,6-1,6-2,6-3			3	하당로 206,208,210,210-1,212,206-2 하당로 214번길 6,6-1,6-2,6-3	
		4	백년대로 323번길 21,23,25,27, 27-1,31,33,35,37,37-1,41 하당로 214번길 3,5,7,9,17,17-1,19 하당로 214			4	백년대로 323번길 21,23,25,27, 27-1,31,33,35,37,37-1,41 하당로 214번길 3,5,7,9,17,17-1,19 하당로 214	
		5	백년대로 307번길 6,11-1,12,12-1, 13,13-1,14,14-1,15-1,15-2, 16, 16-1,16-2,19,20,20-1,20-2 백년대로 315번길 11,11-1,12,12-1, 12-2,13,13-1,13-2,6,9 백년대로 323번길 7,17,17-1,17-2, 17-3,17-4,15,15-1,16,16-1, 백년대로 313, 319			5	백년대로 307번길 6,11-1,12,12-1, 13,13-1,14,14-1,15-1,15-2, 16, 16-1,16-2,19,20,20-1,20-2 백년대로 315번길 11,11-1,12,12-1, 12-2,13,13-1,13-2,6,9 백년대로 323번길 7,17,17-1,17-2, 17-3,17-4,15,15-1,16,16-1, 백년대로 313, 319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17	1	백년대로 325,327,331,331-1,335,339 백년대로 337번길 6,6-14,10, 10-1,14,16,16-1 비파로 91,95,99,101,103,105	15	1	백년대로 325,327,331,331-1,335,339 백년대로 337번길 6,6-14,10, 10-1,14,16,16-1 비파로 91,95,99,101,103,105
		2	비파로 107,111,113,115,117,119,121 백년대로 337번길 22,22-1,24,24-1, 26,30,32-1,24,26,28,42 하당로 236		2	비파로 107,111,113,115,117,119,121 백년대로 337번길 22,22-1,24,24-1, 26,30,32-1,24,26,28,42 하당로 236
		3	비파로 116,118,120,122,124,128 하당로 244,246,248,252,256 비파로 124번길 1,3,5,6,6-1,6-2, 7,8,11,14 옥암로 117,119,121,129 비파로 116번길 3,7-1,7-2,15,16-1,16-2 번영로 120,121		3	비파로 116,118,120,122,124,128 하당로 244,246,248,252,256 비파로 124번길 1,3,5,6,6-1,6-2, 7,8,11,14 옥암로 117,119,121,129 비파로 116번길 3,7-1,7-2,15,16-1,16-2 번영로 120,121
		4	비파로 116번길 66,6-1,6-2,14,14-1,14-2 하당로 108번길 5,5-1,6,6-1,6-2, 7,7-1,8,13,14,16, 16-1,18 비파로 110,114,104,106 옥암로 95,101,103 번영로 111,113		4	비파로 116번길 66,6-1,6-2,14,14-1,14-2 하당로 108번길 5,5-1,6,6-1,6-2, 7,7-1,8,13,14,16, 16-1,18 비파로 110,114,104,106 옥암로 95,101,103 번영로 111,113
	18	1	쇳나루길 126,130,132,138 양을로 532번길 37 비파로 162 번영로 167	16	1	쇳나루길 126,130,132,138 양을로 532번길 37 비파로 162 번영로 167
		2	하당로241번길 21,22,24,25,25-1, 26,27,28,31 비파로 152,154,156,158,160 번영로 162 양을로 532번길 29,32,34,36 양을로 502		2	하당로241번길 21,22,24,25,25-1, 26,27,28, 29, 31
					3	비파로 152,154,156,158,160 번영로 162 양을로 532번길 29,32,34,36 양을로 50
					4	양을로 508(센트럴 팰리체 101동 201~1410호)
		3	양을로 512,516,518,520 양을로 532번길 12,16,16-1,17,17-1, 18,19,20,22,23,23-1,24,26 하당로 241번길 11,13,15,17-1,19 비파로 140,142,144,148,148-1 번영로 142	17	1	양을로 512,516,518,520 양을로 532번길 12,16,16-1,17,17-1, 18,19,20,21,22,23,23-1,24,26
					2	하당로 241번길 11,12,13,13-1, 15,16,16-1,17,17-1,19 비파로 140,142,144,146,148,148-1,150 번영로 142
		4	양을로 522,522-1,526,528,534 양을로 532번길 1,2,3,4,8,10, 12,12,12-1 하당로 24,237,241,251,255-1,255 번영로 138,139,139-1,140,140-1, 142, 144,144-1 하당로 241번길 7,9 비파로 136,138,138-1		3	양을로 522,522-1,526,528,534 양을로 532번길 1,2,3,4,8,10, 12,12-1,14
					4	하당로 24,237,241,251,251-1,255-1,255 번영로 138,139,139-1,140,140-1, 142, 144,144-1 하당로 241번길 7,9 비파로 136,138,138-1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19	1	석현로 42(광명샤인빌아파트 101동 101~1504호, 상가)	18	1	석현로 42(광명샤인빌아파트 101동 101~1504호, 상가)
		2	" (광명샤인빌아파트 101동 105~1508호)		2	" (광명샤인빌아파트 101동 105~1508호)
		3	" (광명샤인빌아파트 102동 101~1504호)		3	" (광명샤인빌아파트 102동 101~1504호)
		4	" (광명샤인빌아파트 102동 105~1508호)		4	" (광명샤인빌아파트 102동 105~1508호)
		5	" (광명샤인빌아파트 103동 101~1504호)		5	" (광명샤인빌아파트 103동 101~1504호)
		6	" (광명샤인빌아파트 103동 105~1508호)		6	" (광명샤인빌아파트 103동 105~1508호)
	20	1	석현로59번길 3,5,7,21,21-1(삭제) 석현로 1-1,5,7,9,13-1,15,21,27, 29,31,37,41,45,51 석현로35번길 1,3,4,7,11,15,16,21 석현로25번길 6,8,10,15,16,20,20-5 옥암로 200,200-1	19	1	석현로45번길 19(수창해뜨레 101동 101~1404호)
		2	석현로 6, 12, 18, 18-1, 18-2, 24, 28, 46,(삭제) 38, 42, 48 옥암로 190(삭제),192 옥암로 186번길 1, 9, 11, 13, 19, 19-1, 20,(삭제) 30-7, 30-11		2	석현로45번길 19(수창해뜨레 101동 105~1506호) 석현로 1-1,5,7,9,13,13-1,15, 21,27,29,31,37,41,45,51 석현로25번길 6,8,10,15,16,20,20-5 석현로35번길 1,3,4,7,11,15,16,21 석현로45번길 7, 9, 15, 16 옥암로 200, 200-1
					3	석현로45번길 19(수창해뜨레 102동 101~1504호)
		3	옥암로 186번길 20-1 (대송베스트빌아파트 101동 101~1504호)	20	1	옥암로 186번길 20-1 (대송베스트빌아파트 101동 101~1504호)
					2	옥암로 186번길 20-1 (대송베스트빌아파트 101동 105~1508호)
		4	옥암로 186번길 20-1 (대송베스트빌아파트 101동 105~1508호)		3	석현로 18(스타팰리스 101동) 18-2(스파팰리스 102동)
					4	석현로 12, 18-1(스타팰리스 103동), 24, 28, 46, 48 옥암로 182, 190 옥암로186번길 1, 5, 9, 11, 13(스파팰리스 104동), 19, 19-1, 20, 30-7, 30-11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하당동	21	1	옥암로 165 (광명샤인빌아파트 201동)	21	1	변동사항없음
		2	옥암로 165 (광명샤인빌아파트 202동)		2	변동사항없음
		3	옥암로 165 (광명샤인빌아파트 203동)		3	변동사항없음
		4	옥암로 165 (광명샤인빌아파트 204동)		4	변동사항없음
		5	옥암로 165(광명샤인빌아파트 상가) 쇤나루길 145,153,158,165,167 169,172,175,175-1,177,177-1, 178,183 옥암로 143,145,147,149,151,155 1159,165,167,173,179,181,187,1 91,195,197,199,199-1		5	변동사항없음
	22	1	옥암로 174 (빌리앙뜨아파트101동)	22	1	변동사항없음
		2	" 174 (빌리앙뜨아파트102동)		2	변동사항없음
		3	" 174 (빌리앙뜨아파트103동)		3	변동사항없음
		4	" 174 (빌리앙뜨아파트104동)		4	변동사항없음
		5	" 174 (빌리앙뜨아파트105동)		5	변동사항없음
	23	1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 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1동)	23	1	변동사항없음
		2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 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2동, 상가동)		2	변동사항없음
		3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 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3동)		3	변동사항없음
		4	석현로 45번길 22-10(라송센 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5동)		4	석현로 45번길 22-10(라 송센트럴카운티3차아파트 305동) 석현로59번길 3, 5, 7, 25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1	1	백년대로 232, 234, 238, 244, 246, 250, 252, 254, 256 하당로 103, 101-1, 101, 99, 90, 94, 94-1, 98-1, 100, 102, 96, 98 입암로 6, 6-1, 6-2, 8, 10, 10-1, 12(삭제) 입암로 11-1, 11, 5, 3, 1, 7-1 입암로4번길 3, 3-1, 3-2, 5, 5-1, 5-2, 7, 7-1, 7-2, 9, 9-1, 9-2, 11-1, 11-2(삭제) 입암로4번길2, 4, 4-1, 12 백 년 대 로 2 5 6 번 길 10, 10-1, 10-2, 12-1, 12-2 14, 14-1, 14-2, 16, 18, 18-1(삭제)	1	1	백년대로 232, 234, 238, 244, 246, 250, 252, 254, 256 하당로 103, 101-1, 101, 99, 90, 94, 94-1, 98-1, 100, 102, 96, 98 입암로 11-1, 11, 5, 3, 1, 7-1 입암로4번길 2, 4, 4-1, 12
		2	백년대로258, 258-1, 260, 262-1, 262(삭제) 백년대로256번길 7, 9-1, 9, 11, 11-1, 13, 13-1, 15, 15-1, 17(삭제) 백년대로266번길2, 10-1, 12, 14, 16, 18(삭제) 입암로 16, 17, 18, 18-1, 19, 20, 21, 22(삭제) 입암로20번길 1, 1-1, 3, 4, 4-1, 5, 6, 6-1, 7, 8, 8-1, 9, 10, 10-1, 11, 12, 12-1(삭제)			입암로6, 6-2, 8, 10, 10-1, 12, 6-1 입암로4번길 3, 3-1, 3-2, 5, 5-1, 5-2, 7, 7-1, 7-2, 9, 9-1, 9-2, 11-1, 11-2 백년대로256번길 10, 10-1, 10-2, 12-1, 12-2, 14, 14-1, 14-2, 16, 18, 18-1, 8, 16-1
		3	입암로4번길 13, 13-1, 15, 31, 27, 21(삭제) 입암로20번길 14, 16, 16-1, 14-1, 19-1, 19, 15, 13, 25, 24, 18, 20, 22, 22-1, 18-3, 18-1, 18-2(삭제) 백년대로256번길 20-1, 20, 22, 22-2, 22-1, 19, 19-1, 21-1, 21(삭제) 백년대로266번길 20, 22, 26, 24-1(삭제)			백년대로256번길 7, 9-1, 9, 11, 11-1, 13, 13-1, 15, 15-1, 17 입암로 16, 18, 18-1, 20, 22 입암로20번길, 4, 4-1, 6, 6-1, 8, 8-1, 10, 10-1, 12, 12-1
		4	입암로4번길 14, 16, 18, 20, 22, 26, 30, 30-1, 26-1, 28, 36-1(삭제) 하당로 82, 84, 86, 88, 82-1, 68, 76, 78, 76-1, 74-1, 72, 74, 3, 36, 9(삭제)			백년대로258, 258-1, 260, 262-1, 262 백년대로266번길2, 10-1, 12, 14, 16, 18 입암로 17, 19, 21 입암로20번길 1, 1-1, 3, 5, 7, 9, 11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2	1	하당로 77, 66, 62 , 56, 56-1, 58-1, 60, 58, 58-2, 46, 48, 50, 52, 50-1, 52-1 하당로68번길 14, 16, 18, 20, 20-1, 8, 10, 10-1, 12 (삭제) 하당로60번길 15, 13-1, 13, 11, 9, 11-1, 10, 10-1, 10-2, 18(삭제) 하당로60번길 3, 7, 4, 8, 6 하당로30번길 29, 27, 23(삭제) 하당로34번길 22(삭제) 하당로44번길 5-4, 5-3, 5-2, 5-1, 5, 13(삭제) 하당로44번길 3-5, 3-3, 3-1, 3, 3-4	2	1	하당로 77, 66, 62 , 56, 56-1, 58-1, 60, 58, 58-2, 46, 48, 50, 52, 50-1, 52-1 하당로68번길 8, 10, 10-1 하당로60번길 3, 7, 4, 8, 6, 하당로44번길 3-5, 3-3, 3-1, 3, 3-4, 3-2
		2	하당로30번길 17, 15-1, 13 , 19, 15, 5-1, 3, 11, 9, 7, 5, 1(삭제) 하당로34번길 10, 14, 16, 12, 13, 11, 9-1, 9, 7, 5-2, 5-1, 3, 2, 4, 4-1, 6, 8, 5-3, 5(삭제) 하당로44번길 8, 14, 10, 6, 6-1, 4, 4-1, 4-2(삭제) 하당로 36, 36-1, 38-1, 38, 40(삭제)			하당로68번길 14, 16, 18, 20, 20-1, 12 하당로60번길 15, 13-1, 13, 11, 9, 11-1, 10, 10-1, 10-2, 18 하당로30번길 29, 27, 23, 25 하당로34번길 22, 20 하당로44번길 5-4, 5-3, 5-2, 5-1, 5 , 13
		3	교육로 5 , 17, 15, 11, 13-1, 13 , 23 , 21, 19(삭제) 교육로41번길 5, 3(삭제) 하당로30번길 8, 10, 10-1, 12, 14, 14-1, 16, 18-1, 18-2, 18(삭제) 하당로44번길 18(삭제)			하당로30번길 17, 15-1, 13 , 19, 15, 5-1, 3, 11, 9, 7, 5, 1 하당로34번길 10, 14, 16, 12, 13, 11, 9-1, 9, 7, 5-2, 5-1, 3, 2, 4, 4-1, 6, 8, 5-3, 5 하당로44번길 8, 14, 10, 6, 6-1, 4, 4-1, 4-2 하당로 36, 36-1, 38-1, 38, 40
		4	교육로 29, 27, 28, 30, 37, 38, 35, 40(삭제) 교육로41번길 8 , 6, 24, 22(삭제) 장미로 5, 3, 1(삭제) 부흥로 1, 3, 7, 17(삭제) 비파로43번길 37, 42-1, 40-1, 40, 36, 42, 46(삭제) 비파로51번길 41-1, 37, 35, 41, 39, 44, 46(삭제) 신흥로 2, 2-1, 4, 10, 10-1 , 12, 12-1, 14, 14-1, 16 , 8(삭제)			교육로 5 , 17, 15, 11, 13-1, 13 , 23 , 21, 19 교육로41번길 5, 3 하당로30번길 8, 10, 10-1, 12, 14, 14-1, 16, 18-1, 18-2, 18 하당로44번길 18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28	1	백년대로 270, 272, 274 백년대로266번길 11, 11-1, 13, 7, 9-1, 9 백년대로274번길 9-1, 9, 13-2, 13, 11-1, 13-1, 10, 10-1, 12, 14-1, 7, 14 백년대로280번길 6, 8, 10, 10-1, 10-2, 12-1, 14, 24 입암로 34, 34-1, 36, 33	28	1	백년대로 270, 272, 274 백년대로266번길 11, 11-1, 13, 7, 9-1, 9 백년대로274번길 9-1, 9, 13-2, 13, 11-1, 13-1, 10, 10-1, 12, 14-1, 7, 14 백년대로280번길 6, 8, 10, 10-1, 10-2, 12-1, 14, 24 입암로 34, 34-1, 36, 33
		2	백년대로 282, 284, 288 백년대로280번길 23, 21-1, 21, 17, 15, 19, 13, 11-1, 11, 9, 7 교육로 63, 59, 55, 53, 51-1, 49, 51 입암로42번길 15-1, 11, 15, 12, 12-1, 16, 18, 14, 14-1, 20, 22, 4, 8			백년대로 282, 284, 288 백년대로280번길 23, 21-1, 21, 17, 15, 19, 13, 11-1, 11, 9, 7 교육로 63, 59, 55, 53, 51-1, 49, 51 입암로42번길 15-1, 11, 15, 12, 12-1, 16, 18, 14, 14-1, 20, 22, 4, 8
		3	입암로42번길 30-1, 30, 30-2, 31, 29, 27, 25-1, 23, 25(삭제) 입암로42번길21, 19-1, 19, 17, 17-1 하당로68번길 21, 19, 17, 15-1, 13, 19-1, 15, 23(삭제) 교육로 45-1, 교육로 45 교육로41번길19, 17, 15-1, 15, 13(삭제) 교육로41번길25, 21, 21-1			입암로42번길 21, 19-1, 19, 17, 17-1 교육로 45-1, 교육로 45 교육로41번길 25, 21, 21-1
		4	입암로42번길 24, 26, 26-1, 28-1, 28-3, 28, 28-2 백년대로266번길 31-3, 31, 31-2, 31-1, 25, 25-1, 25-2, 25-3 백 년 대 로 2 8 0 번 길 37, 35-1, 33-1, 33, 31, 29-1, 29, 25, 35, 27, 28, 30, 36, 32			입암로42번길 24, 26, 26-1, 28-1, 28-3, 28, 28-2 백년대로266번길 31-3, 31, 31-2, 31-1, 25, 25-1, 25-2, 25-3 백 년 대 로 2 8 0 번 길 37, 35-1, 33-1, 33, 31, 29-1, 29, 25, 35, 27, 28, 30, 36, 32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신 설	35	1	평화로83번길16, 101동 801호~4102호, 4201호 (상동, 목포평화광장에메랄드권), 상가
					2	평화로83번길16, 101동 803호~4105호 (상동, 목포평화광장에메랄드권)
					3	평화로83번길16, 102동 801호~4102호, 4201호 (상동, 목포평화광장에메랄드권)
					4	평화로83번길16, 102동 803호~4104호, 4203호 (상동, 목포평화광장에메랄드권)
			신 설	36	1	입암로4번길 13, 13-1, 15, 31, 27, 21 입암로20번길 14, 16, 16-1, 14-1, 19-1, 19, 15, 13, 25, 24, 18, 20, 22, 22-1, 18-3, 18-1, 18-2 백년대로256번길 20-1, 20, 22, 22-2, 22-1, 19, 19-1, 21-1, 21 백년대로266번길 20, 22, 26, 24-1
					2	입암로4번길 14, 16, 18, 20, 22, 26, 30, 30-1, 26-1, 28, 36-1 하당로 82, 84, 86, 88, 82-1, 68, 76, 78, 76-1, 74-1, 72, 74, 3, 36, 9
					3	입암로42번길 30-1, 30, 30-2, 31, 29, 27, 25-1, 23, 25 하당로68번길 21, 19, 17, 15-1, 13, 19-1, 15, 23 교육로41번길19, 17, 15-1, 15, 13
					4	교육로 29, 27, 28, 30, 37, 38, 35, 40 교육로41번길 8, 6, 24, 22 장미로 5, 3, 1 부흥로 1, 3, 7, 17 비파로43번길 37, 42-1, 40-1, 40, 36, 42, 46 비파로51번길 41-1, 37, 35, 41, 39, 44, 46 신흥로 2, 2-1, 4, 10, 10-1, 12, 12-1, 14, 14-1, 16, 8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부주동	5	1	후광대로 105번길 27, 25, 23, 17, 17-2, 17-1, 11-8, 8, 4 후광대로 105번안길 13, 25-3, 25-1, 21, 33, 33-6, 33-2, 7, 24, 24-1, 26, 28, 30-1, 34 정의로 2, 4-3, 4-13, 14, 16, 12-3, 22, 24, 26-4, 26-8, 26-14, 9, 29, 30, 34--12 후광대로 143번길 7, 28, 31, 12-5, 12-4, 12-6, 12-8, 8, 51-2, 51-1, 8-6 후광대로 143번안길 1, 3, 2, 4, 8-16, 8-7, 12, 12-8, 8-7, 16, 16-10, 40, 50, 38-1, 22-9, 22-7, 47, 35 옥암동 1179-0, 1/1180/1181-1, 3, 6~10/1182-1~7, 9, 11~15 /1183-1~4, 8~9/1184-1~5, 7~10, 12/1185/1186-1~2/1187-1~4, 6~8/1188-1, 3, 6~8/1189-1~21/1190-1, 6, 8, 9 /1191-1~7 / 1192-1~4, 8/1193-1, 4/1194/1195-2, 3/1196-1, 3~5/1197-1~11/ 1199-1/1202-4, 5, 7, 8/1203/1204-1, 2, 4/1205/1206-3/1207-1, 4, 5 /1208-2~5/1209-4~8, 10~12/1210-1, 5, 8~10/1211-1, 3, 5~10, 12/1212-1, 3, 4~6, 8~12/1213-1~7/1214/ 1215-2/1216/ 1217-2~7, 9~13/1218-1~9, 13, 14/1219-1~3, 5~9/1220-1~7, 9~10/1221-1~6/1222-1~6/1223-1, 2/1224	5	1	후광대로 105번길 27, 25, 23, 17, 17-2, 17-1, 11-8, 8, 4, 17-8, 17-5, 13, 11-6 후광대로 105번안길 13, 25-3, 25-1, 21, 33, 33-6, 33-2, 7, 24, 24-1, 26, 28, 30-1, 34, 2, 5, 3, 15-3, 15-4, 25-7, 17, 25-6, 25-8, 25-4, 33-7, 33-3, 33-8, 22, 30 정의로 2, 4-3, 4-13, 14, 16, 12-3, 22, 24, 26-4, 26-8, 26-14, 9, 10, 8, 6, 4-10, 4-5, 12-5, 26-2 옥암동 1179-0, 1/1180/1181-1, 3, 7~10/1182-1~2, 4, 6, 9, 11, 12, 15/1183-1, 4, 8/1184-3, 5, 8, 9, 12 /1186-1~2/1187-1, 6~8/1188-3, 6~8/1189-1~11/1190-8, 9 /1191-1~7 /1192-4/1193-4/1194/1195-3/1196-3~5/1197-1~10/1205
		2	후광대로 110, 114, 116, 128 남악1로 56, 남악1로 52번길 7, 11-4, 23-6, 35-7, 2, 6-3, 8, 10, 12-4, 6-9, 6-5, 26, 28, 38 남악1로 48 남악1로 42번길 1, 5 남악1로 52번가길 2, 2-3, 2-5, 2-7, 2-9, 2-11, 2-13, 9, 2-6, 11, 2-8, 2-10, 17-5, 13, 17-8, 19-9, 17, 17-4, 17-6, 19-10, 19-4, 21 남악1로 52번나길 4-12, 4-8, 4-6, 4-4, 2, 4-11, 4-9, 4-7, 4-5, 4-3, 8-2, 8-6, 8-8, 6, 8-9, 8-7, 8-5, 8-3, 8-1, 8, 12, 12-9, 12-1, 16 옥암동 1225-4, 5/1226/1227-1~3/11228-1~6/1230-1, 2, 4 / 1231 /1232/1233-1~3/1234-1, 2/1235-2~5/1236-1~4/1237-1~4, 6/1238 /1239-1/1240-2~4/1247-5~10/1249/1250-1, 10, 11, 13, 14, 16 / 1251/1253-4, 5, 7/1254-2, 4~7, 9/1255-7/1257-4, 5, 8~10/ 1259-1~3/1281~1290/1367/1368/	2	정의로 29, 30, 34--12 후광대로 143번길 7, 28, 31, 12-5, 12-4, 12-6, 12-8, 8, 51-2, 51-1, 8-6, 3, 26, 12-1, 6, 8-14, 8-16 후광대로 143번안길 1, 3, 2, 4, 8-16, 8-7, 12, 12-8, 8-7, 16, 16-10, 40, 50, 38-1, 22-9, 22-7, 47, 35, 6, 8-2, 12-12, 8-9, 14, 12-9, 16-1, 22, 24, 36, 22-5, 49, 47-1, 27, 29, 31, 35-1, 37 옥암동 1189-12~21/1197-11/1202-4, 5, 7/1203/1204-1, 2, 4/1206-3/ 1207-4, 5/1208-2~5/1209-5, 7, 8, 10, 12/1210-1, 5, 8~10/1211-1, 3, 6~9, 12/1212-3, 4~6, 8, 9, 11, 12/1213-3~7/1214/1216/1217-2, 3, 5, 6, 9~13/1218-2~7, 9, 14/1219-1, 5~9/1220-1, 4, 6, 7/1221-1~6/1222-1~6/1223-1, 2/1224/1368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부주동	14	1	당가두로 36, 34-2, 34-1, 34, 32, 30-1, 30, 28, 16, 18, 18-1, 20, 22, 22-1, 24, 26, 4 당가두로 14번길 43, 45, 47, 47-1, 49, 51, 2, 44-1, 46-4, 24-7, 26, 46, 50, 50-4, 50-6, 50-8, 20-7, 20-5, 20-3, 20, 24, 24-6, 46-7, 46-3, 50-1, 4, 6, 10, 10-1, 12, 14, 16, 20-2, 20-4, 20-6, 20-8, 50-3 옥암동 1085-2/1138/1143-1~11, 1147-1~3/1154/1155-0, 1/1156 / 1157-1, 4, 5, 7~9, 11~18/1158-9, 12, 13, 15, 17/1159-4, 10, 15, 16	14	1	당가두로 14번길 44-1, 46-4, 24-7, 26, 46, 50, 50-4, 50-6, 50-8, 20-7, 20-5, 20-3, 20, 24, 24-6, 46-7, 46-3, 42, 46-6, 46-8, 24-5, 24-3, 24-1, 28, 32, 34, 36, 38, 40, 20-1, 24-2, 24-4, 46-5 옥암동 1085-2/1138/1147-1~3/1154 / 1155-0, 1/1156/1157-12, 15/ 1158-15/1369-2, 3
		2	당가두로 14번길 5, 3-4, 3-8, 3-12, 7-11, 당가두로 38번길 8-24, 8-28, 8-30, 8-36, 4-27, 4-17, 4-15, 4, 8-3, 12-2, 12-4, 48-7, 48-5, 18-3, 48-1, 8-25, 8-23, 8-19, 8-17, 8-15, 8-9, 8-5, 12-1, 16-2, 16-4, 48-10, 48-2, 48-4, 48-6, 48-8, 22, 16-1, 24, 26, 28, 16-5, 44-10, 32, 42, 44-6, 44-8, 23 녹색로 287, 271 옥암동 1160/1161/1162-2, 4, 6, 7, 9, 10~12/1163-1~5, 7, 10, 13, 14~16/1164/1166-4~6, 10, 18/1167-4~11/1168-2~7/1169-6, 8~11, 13/1170-3~8, 10, 11/1171/1369-2, 3			당가두로 16, 18, 18-1, 20, 22, 22-1, 24, 26, 4 당가두로 14번길 43, 45, 47, 47-1, 49, 51, 2, 50-1, 4, 6, 10, 10-1, 12, 14, 16, 20-2, 20-4, 20-6, 20-8, 50-3, 50-7, 50-5, 5, 3-4, 3-8, 3-12, 7-11, 7-3, 7-5, 7-7, 7-9, 3-14 녹색로 287 옥암동 1143-3~5/1159-4/1159-10/1160/ 1162-2, 4, 7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부주동	26	1	남악1로52번길, 82, 301~302동(옥암동, 골드디움3차아파트)	26	1	남악1로52번길, 82, 301~302동(옥암동, 골드디움3차아파트)
		2	남악1로52번길, 82, 303~306동(옥암동, 골드디움3차아파트)		2	남악1로52번길, 82, 303~306동(옥암동, 골드디움3차아파트)
		3	남악1로52번길, 82, 307~309동(옥암동, 골드디움3차아파트)		3	남악1로52번길, 82, 307~309동(옥암동, 골드디움3차아파트)
		4	남악1로52번길 58, 68-3 남악1로52번나길 1, 1-1, 31-11, 45-3, 45-2, 45-1, 45, 7, 31-9, 31-7, 31-5, 9-1, 5, 31-10, 35-7, 35-5, 35-1, 31-4, 31-6, 35-8, 43, 35-2, 35-4, 35-6, 11, 27, 15, 13, 24 남악1로52번가길 8, 10, 10-1, 12, 14, 16, 16-1, 26 남악1로42번길 59-6 옥암동 1246-1, 2/1261-1, 5, 6/1262-4, 6, 7, 10/1263-3, 4/ 1264-2, 3, 5~8/1265/1266-8, 9/1267/1268-1~3, 5~9/1269 / 1291~1297		4	남악1로52번길 58, 68-3 남악1로52번나길 1, 1-1, 31-11, 45-3, 45-2, 45-1, 45, 7, 31-9, 31-7, 31-5, 9-1, 5, 31-10, 35-7, 35-5, 35-1, 31-4, 31-6, 35-8, 43, 35-2, 35-4, 35-6, 31-3, 31-1, 35-3, 35, 31-2, 41, 39 남악1로42번길 59-6 옥암동 1246-1, 2/1261-1/1262-10/ 1269/1294~1296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부주동			신 설	30	1	당가두로 36, 34-2, 34-1, 34, 32, 30-1, 30, 28 당가두로38번길 8-24, 8-28, 8-30, 8-36, 4-27, 4-17, 4-15, 4, 8-20, 4-23 옥암동 1143-1, 2, 6/1163-1~4, 7, 10, 13, 15, 16/1164
					2	당가두로38번길 8-3, 12-2, 12-4, 48-7, 48-5, 18-3, 48-1, 8-25, 8-23, 8-19, 8-17, 8-15, 8-9, 8-5, 12-6, 12-8, 12-10, 50 옥암동 1143-7/1166-18
					3	당가두로38번길 12-1, 16-2, 16-4, 48-10, 48-2, 48-4, 48-6, 48-8, 16-6, 16-8, 16-10, 12-9, 12-7, 12-5, 44-7, 44-5, 44-3, 44-1, 46 옥암동 1143-8/1167-7, 11/1168-2
					4	당가두로38번길 22, 16-1, 24, 26, 28, 16-5, 44-10, 32, 42, 44-6, 44-8, 23, 30, 16-9, 16-3, 36, 44-2, 44-4 옥암동 1143-9~11/1169-6, 9, 11/1170-3, 4, 6-8/1171
			신 설	31	1	후광대로 110, 114, 116, 128, 134 남악1로 56, 48, 60 남악1로52번길 7, 11-4, 23-6, 35-7, 2, 6-3, 8, 10, 12-4, 6-9, 6-5, 26, 28, 11-5, 23-5, 31-7, 31-5, 31-3, 27, 35-7 남악1로42번길 1, 5 남악1로52번가길 2, 2-3, 2-5, 2-7, 2-9, 2-11, 2-13, 9, 2-6, 11, 3, 8, 10, 10-1 옥암동 1225-4, 5/1226/1227-2, 3/1228-1, 2, 4, 5/1230-1, 2, 4/1231/1232/1233-1~3/1234-1, 2/1235-2, 4, 5/1236-1, 4/1237-2, 6/1239/1240-3, 4/1247-5~10/1250-1, 10, 11/1265/1281~1285/1297/1367
					2	남악1로52번가길 2-8, 2-10, 17-5, 13, 17-8, 19-9, 17, 17-4, 17-6, 17-3, 15, 19-11, 19-7, 19-3, 12, 14, 16, 16-1, 18 옥암동 1253-7/1254-5, 7, 9/1266-9/1267/1286/1287/1291
					3	남악1로52번길 38, 40 남악1로52번가길 19-10, 19-4 남악1로52번나길 4-12, 4-8, 4-6, 4-4, 2, 4-11, 4-9, 4-7, 4-5, 4-3, 8-2, 8-6, 8-8, 6, 8-9, 8-7, 8-5, 8-3, 8-1, 8, 12 옥암동 1250-14, 16/1255-7/1257-8~10/1288
					4	남악1로52번가길 21, 26, 22, 30 남악1로52번나길 12-9, 12-1, 16, 11, 27, 15, 13, 24, 21, 19, 22 옥암동 1259-1~3/1264-2, 3, 5, 8/1268-2, 3, 5, 6, 8/1289/1290/1292/1293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84호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①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의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서면심의 경우는 작성을 생략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9.12.23.>

2000- 호

기 부 증 서

성명(기관·단체명)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목포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사용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9.12.23.>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illegible]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19.12.23.>

위 축 장

○ ○ ○

귀하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
조제3항 및 목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
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
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정 2019.12.23.>

목포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장 소	
참석현황	현 원	참 석	불 참	참석위원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 요지 등)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정 2019.12.23.>

시 설 이 용 권

기부증서번호 :

시 설 이 용 권

(기부자 : 000)



목 포 시 장 직인

이용대상시설

시 설 명	비 고
목포자연사박물관	입장료 면제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입장료 면제
목포시립예술단체연주회	입장료 면제
목포근대역사관	입장료 면제

발급일 : 2000. 00. 00.

- 본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시설 이용은 본인에 한함.

목포시 공고 제2019-1799호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공포·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3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사항 규정(안 제4조 ~ 9조)

3.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9. 12. 23. ~ 2020. 1. 13.(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 기획예산과 (목포시 양을로 203 우. 58613)

전화 061)270-3578, FAX 061)270-3592, E-mail dodger15@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